

제3권 제2호
2012

한국이민학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연구논문

덴마크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설동훈 · 이병하

결혼이민자 정보격차 결정요인 분석

고재훈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지은 · 이정환 · 김석호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한국이민학

2012년 제3권 제2호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및 집필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화: (063) 270-2917 팩스: (063) 270-2921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3만원

대학원생: 2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회 임원진

회 장 단

회 장 한 경 구(서울대학교)

차 기 회 장 이 철 우(연세대학교)

부 회 장 정 기 선(IOM이민정책연구원) 허 재 준(한국노동연구원)

박 경 태(성공회대학교) 장 수 현(광운대학교)

감 사 이 충 훈(서강대학교) 이 창 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사

총 무 이 사 한 건 수(강원대학교) 편 집 이 사 설 동 훈(전북대학교)

연구 이 사 이 규 용(한국노동연구원) 기 획 이 사 이 진 영(인하대학교)

섭 외 이 사 김 이 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 제 이 사 김 현 미(연세대학교)

한국이민학

2012년 제3권 제2호

연구논문

덴마크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설동훈 · 이병하	5
결혼이민자 정보격차 결정요인 분석 고재훈	25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지은 · 이정환 · 김석호	59

부록

한국이민학회 정관	79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87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91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93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99

편집위원

설동훈(위원장, 전북대) 김현미(연세대) 서정민(연세대) 윤홍식(인하대)
이규용(노동연구원) 이병하(서울시립대) 이승미(우석대) 이정환(청주대)
조현미(경북대) 최현(제주대) 최홍엽(조선대) 한건수(강원대)

편집간사

박순영(전북대) 서영효(전북대) 이태훈(전북대)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3 No.2 2012

Contents

ARTICLES

- Denmark's Immigration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ystem
| Dong-Hoon Seol, and Byoungha Lee
 - Determinants of Digital Divide among th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 Jae-Hun Ko
 - Effect of Job-related Satisfaction on Mental Health of Im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 Ji-eun Han, Junghwan Lee, and Seokho Kim
-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연구논문

덴마크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설동훈** · 이병하***

이 논문은 덴마크의 이민정책을 이민자의 현황과 법적 지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과 시민 대상 사회통합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덴마크의 이민자 사회통합관련 업무는 사회·통합부가 법무부, 이민청, 아동·교육부, 고용부 등과 분업과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2011년 10월 출범한 새 정부는 ‘난민·이민·통합부’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난민·이민·통합부의 기능은 대부분 사회·통합부와 법무부로 분산되었고, 일부는 아동·교육부와 고용부로 배치되었다. 사회·통합부에서는 아직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발표한 바 없으므로, 난민·이민·통합부의 정책을 통해 덴마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보면 시민권과 포용, 신규 이민자 통합, 새로운 취업 이민, 여성이민자, 이민자들의 고용, 낙후된 지역에서 풍요로운 지역으로, 통합정책의 효율성 강화 및 지식 공유, 통합의 국제협력과 같은 아홉 가지 중점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주제어: 이민자, 이민정책, 사회통합정책, 이민법, 이민청, 덴마크

* 이 글은 설동훈·강기정·이병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1 중 저자들이 집필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dhseol@chonbuk.ac.kr.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byoungha@uos.ac.kr.

I. 이민 현황과 정책

덴마크 인구는 약 540만 명으로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덴마크 인구의 70%는 네 개의 주요 도시인 코펜하겐(København)·아후스(Aarhus)·오덴스(Odense)·알보그(Aalborg)에 거주한다. 덴마크인은 대부분 종족적으로 스칸디나비아 전역의 투타닉(Teutonic) 계통의 데인인(Danes)이다. 덴마크의 외국인 수는 총 인구의 약 5% 정도이며, 1984년의 외국인 비율이 2%였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전체 외국인 중 약 12%가 노르딕 국가, 43%는 비유럽 지역, 25%는 아시아, 12%는 아프리카, 5%는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다.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다. 그 당시 덴마크 국민 중 상당수가 호주·캐나다 등으로 이민(emigration)을 떠났으므로, 덴마크는 전형적 송출국으로 간주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3년 석유위기 때까지 덴마크 노동시장은 거의 완전 고용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면서 덴마크인의 해외이주는 대폭 감소하였고, 대신 유고슬라비아·터키·파키스탄 등지 출신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었다. 1960년대 덴마크 경제 성장기에 정부가 ‘초빙노동자’(guest workers) 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석유위기로 인해, 덴마크 정부는 이주노동자 충원 제도를 중지하였다. 그렇지만 기존 이주노동자들은 덴마크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덴마크의 이민은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정착한 터키인의 가족 재결합(family reunions) 이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와 동시에 폴란드·이란·이라크·레바논·스리랑카에서 온 난민 인구가 급증하였다. 1990년대에는 구 유고슬라비아와 소말리아 출신 난민 인구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기근과 전쟁의 혼란 상황에 영향을 받아 실시된 새로운 인도주의적인 정책들은 소규모 이민자 공동체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적인 국가인 덴마크에서도 점진적인 우경화 현상이 나타났다. 가족 재결합과 난민 수용으로 인해 증가한 무슬림 인구와 덴마크의 가치가 충돌하게 되면서 반(反)이민정서가 생겨났다. 가족 재결합으로 인한 복지 부담 증가와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이민통제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면서, 특히 2001년 선거에서는 이민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표 1> 덴마크의 이민 현황, 2000-2009년

이민 유형(migration flows: 외국인) 나라별 정의(주민 천명당 인원)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천명)
					2000-2004	2005-2009	2009
이입	4.3	3.7	5.6	..	3.9	..	..
이출	2.6	3.0	3.6	..	2.8	..	..
유형별 이입(외국인) 허가 기준 통계치(표준화)	(단위: 천명)				이입자 출신국 중 상위 10개 전체 이입자 중 %		
취업	6.0	6.6	13.1	17.2	2000-2008 연평균 2009		
가족(가족동반 포함)	6.0	6.8	13.3	17.8			
인도적 기준	1.5	1.4	3.2	3.6			
자유이동	30.8	21.9	67.6	57.0			
기타	1.3	1.7	2.9	4.5			
전체	45.6	38.4	100.0	100.0			
단기 이민(단위: 천명)				평균 2005-2009	Poland Germany Ukraine Norway Philippines Sweden Iceland China United Kingdom India		
유학생	6.9	7.4	6.1	6.3			
연수생	1.9	3.1	3.1	2.8			
워킹 홀리데이	..	..	..	..			
계절 근로자	..	..	..	..			
기업 내 전근자	..	..	..	..			
기타 단기 취업자	2.6	4.2	3.7	3.3			
난민 신청자 유입(주민 천명당 인원)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명)
	2.4	0.4	0.4	0.7	2000-2004	2005-2009	2009
					1.4	0.4	3 819
인구 증가의 구성 요소(주민 천명당 인원)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천명)
					2000-2004	2005-2009	2009
전체	3.6	3.0	7.2	5.3	3.0	5.0	29
자연 증가	1.7	1.7	1.9	1.4	1.3	1.7	8
순 인구이동	1.7	1.2	5.3	4.0	1.5	3.3	22
이민 저량(stocks of immigrants; 총 인구 중 %)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천명)
					2000-2004	2005-2009	2009
외국 출생 인구	5.8	6.5	7.3	7.5	6.1	7.0	414
외국인 인구	4.8	5.0	5.8	6.0	4.9	5.5	330
귀화(외국인 인구 중 %)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명)
					2000-2004	2005-2009	2009
	7.3	3.8	1.8	2.0	5.3	2.3	6 537
노동시장 성과	2000	2005	2008	2009	평균		
					2000-2004	2005-2009	
고용률(%)							
자국 출생 남성	81.5	80.4	82.6	78.8	81.1	81.2	
외국 출생 남성	67.0	71.0	73.8	72.9	66.2	71.4	
자국 출생 여성	73.3	73.2	75.8	74.3	73.0	74.7	
외국 출생 여성	53.3	55.7	59.3	62.3	53.9	58.5	
실업률(%)							
자국 출생 남성	3.7	4.2	2.8	6.4	4.0	3.9	
외국 출생 남성	10.7	9.0	6.6	10.3	11.6	8.4	
자국 출생 여성	4.9	4.9	3.3	5.0	4.9	4.3	
외국 출생 여성	6.6	10.4	7.5	10.1	9.0	8.7	
거시경제지표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명)
					2000-2004	2005-2009	2009
실질GDP(연평균 증가율 %; 미국 달러)	3.5	2.4	-1.1	-5.2	1.5	0.2	
1인당GDP(연평균 증가율 %; 미국 달러)	3.2	2.1	-1.7	-5.7	1.2	-0.2	29 193
취업자 수(연평균 증가율 %; 천명)	0.5	1.0	1.9	-3.4	0.0	0.9	2 864
실업률(노동력 중 %)	4.3	4.8	3.2	5.9	4.8	4.3	

자료: OECD (2011: 275).

2001년 11월 20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자유당(Venstre)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 당수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이 승리하였다. 2001-2011년에 집권한 중도우파의 자유당-보수당 연립정부는 극우 성향인 ‘덴마크국민당’(Dansk Folkeparti)과 사안별 공조를 유지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였다.

덴마크국민당은 1995년에 창당되었지만 2001년 이후 원내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여 결정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¹⁾ 덴마크국민당의 강령은 군주제, 국가교회, 강력한 방어, 법과 질서, 덴마크 문화유산의 보전을 강조한다. 덴마크국민당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덴마크는 이민 국가가 아니며 그랬던 적도 없다. 우리는 다종족(multiethnic) 사회로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덴마크국민당은 이민 정책과 사회통합 분야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연립정부에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2005년 9월 덴마크 일간지 《질란드스 포스텐》(Jyllands-Posten)은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테러리스트로 비유하며 경멸하는 내용의 12컷 짜리 만화를 게재하였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덴마크는 악한 국가로 비춰졌고, 폭력시위의 대상이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리비아·이집트·쿠웨이트·이란·파키스탄·바레인 등 이슬람국 정부도 “혐오스러운 인종주의의 발로”라며 덴마크 정부에 공개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덴마크 정부는 “언론 자유는 절대적인 것으로, 협상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거부했다.²⁾ 사태가 확대되자 《질란드스 포스텐》은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우경화된 덴마크 사회 분위기를 포착할 수 있는 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배경으로, 2000년대 처음 10년 간 덴마크 정부는 가족 재결합과 난민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중도우파 연합 정부는 1960-1980년대 이민자를 방치한 것이 실수였다고 반성하면서, 2001년 집권하자마자 ‘난민·이민·통합부’(Ministeriet for flygtninge, indvandrere og integration)를 신설하였다.³⁾ 난민·이민·통합부에서는 2002년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

1) 덴마크국민당은 2001년과 2011년 총선거에서 각각 전체 의석 179개 중 22개(12.3%)를 확보하였다.

2) 어떠한 공격적인 의도가 있지 않더라도, 무함마드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은 무슬림에게는 터부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자유주의 성향의 신문 편집장들은 그 그림을 출판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이해하였다.

3) 덴마크국민당으로 인해 이민과 이민자 통합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자, 중도우파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이 이민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집권과 동시에 ‘난민·이민·통합부’를 설립하였다. http://da.wikipedia.org/wiki/Ministeriet_for_Flygtninge,_Indvandrer_og_Integration

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용 난민의 수를 대폭 줄였다.

그런데 분위기는 급작스레 반전되었다. 2011년 9월 15일 치러진 덴마크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e) 헬레 토르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당수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합 ‘레드 블록’(Red bloc)이 자유당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 ‘블루 블록’(Blue bloc)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레드 블록’의 승리로, 사회민주당이 10여 년만에 재집권하는 동시에, 덴마크 최초의 여성총리가 탄생하였다.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는 2011년 10월 3일 취임과 동시에, ‘난민·이민·통합부’를 해체하여, 그 각각의 기능을 원래 부처로 환원하였다.⁴⁾

II.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덴마크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 외국인이 거주 사증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⁵⁾

-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노르딕 나라 시민이 아닌 경우, 결혼이나 등록된 파트너는 덴마크 당국의 법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
- 결혼은 남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두 사람의 자발적 의지로 한 것이어야 한다.
- 결혼 또는 파트너 등록은 덴마크 거주 사증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동거 파트너와 배우자가 충족해야 할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부 둘 다 24세 이상이어야 한다.
- 덴마크에서 같은 주소에 살아야 한다.
- 덴마크 국민이거나 덴마크에서 28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여야 한다. 28세 미만 덴마크 국민은 추가로 가족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덴마크에 사는 배우자나 동거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http://www.nyidanmark.dk/en-us/News/News/danish_immigration_service/2011/Oktober/inm-is-closed.htm. http://en.wikipedia.org/wiki/Danish_parliamentary_election,_2011.
5) http://www.nyidanmark.dk/en-us/coming_to_dk/familyreunification/spouses/

- 덴마크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 집에 거주하는 총 인원이 방의 개수보다 2배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총 거주 면적이 적어도 1인당 20제곱미터여야 한다. 집은 자기 소유의 집이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 소유의 집, 렌트했을 경우 적어도 3년 이상 거주가 허가된 집이어야 한다.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덴마크로 막 귀국한 경우에는 주거 요건에 약간의 예외가 주어질 수 있다.
-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 12개월 전에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공공부조 금액인 62,231크로네(2010년 기준)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10년 이내에 전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외국인인 배우자가 덴마크에 살도록 거주 사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8월 1일부터 덴마크 내 결혼이민자는 정부에 배우자와 동거인 자격을 신청하기 전 3년 동안은 공공부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제’에 의하여 1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⁶⁾ 결혼이민자라 할지라도 3년의 거주요건을 채우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점을 채워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 덴마크인 배우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다. ‘기본 요건’ 70점은 모두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고, ‘활동적 시민 요건’ 15점과 ‘보충 요건’ 15점은 몇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기본 요건’(fundamental requirements) 70점은 다음 일곱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다.

- 적어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해야한다
- 심각한 범죄를 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 공과금 연체가 없어야 한다(총 금액 100,000크로네 미만).
- ‘적극적 사회정책 프로그램’(lov om aktiv socialpolitik) 또는 ‘통합 프로그램’(integrationsloven)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신청서 제출하기 3년 전부터 받지 않았어야 한다.

6) http://www.nyidanmark.dk/en-us/coming_to_dk/permanent-residence-permit/permanent-residence-permit.htm

-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서명한 서류 또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덴마크어 제2단계(Prøve i Dansk 2) 또는 그 이상 수준의 덴마크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하기 이전 3년 간 2.5년을 덴마크에서 일했어야 하며(파트타임은 안 되고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풀타임이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시점에도 재직 중이어야 한다.

‘활동적 시민 요건’(active citizenship) 15점은 다음 둘 중 하나를 달성해야 한다.

- 적어도 12달 동안 자신이 특정 위원회나 기타 조직에서 ‘활동적 성원’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2011년 6월 처음 실시된 ‘활동적 시민 시험’(Active Citizenship Exam)에 합격해야 한다.

‘보충 요건’(supplementary requirements) 15점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얻을 수 있다.

- 덴마크에서 지난 4.5년간 적어도 4년간 일을 해왔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덴마크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프로그램, 전문학사학위, 경영대학, 고등직업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
- 덴마크어 제3등급(Prøve i Dansk 3) 또는 그 이상 수준의 덴마크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덴마크에서 외국인의 일반귀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덴마크의 영주허가(permanent residence permit) 소지.
- 최소 9년간 계속해서 덴마크 거주.
- 국적 시험(덴마크 사회·문화·역사 등)과 언어 능력 테스트 통과.
- 경제적 자급능력(지난 5년 간 도합 1년 이상 타인의 현금부조를 받지 않았을 것).
- 형사범죄 전과가 있으면 국적 취득 불가, 또는 소정 기간 경과 후 국적 신청 가능.
- 기존 국적 포기.

결혼에 의한 간이귀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배우자와 동거인도 덴마크어 능력과 덴마크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덴마크인과 최소 3년 이상 계속해서 혼인 상태를 유지해 온 자는 거주요건이 6년이고, 2년 연속해서 혼인 상태를 유지해 온 자의 거주 요건은 7년이다.
- 결혼 전 동거했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동거기간도 결혼기간에 포함한다.
- 덴마크인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동 직업이 덴마크 국익에 보탬이 될 경우에 한해 총 과거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 통과 등 여타 귀화 요건은 일반귀화와 동일하다.

Ⅲ.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1. 법제

덴마크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법률로는 ‘외국인법’과 ‘이민자통합법’이 중요하다.⁷⁾ 첫째, 1983년 ‘외국인법’(Bekendtgørelse af udlændingeloven; Aliens (Consolidation) Act)은 배우자, 18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를 가족 재결합의 형태로 초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1992년 개정법은 것처럼 자동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초청자의 가족 부양능력 요건을 강화하였다. 가족 재결합으로 인한 이민자 수의 증가를 억제하려 한다.⁸⁾ 둘째, 1999년 제정한 ‘이민자통합법’(Bekendtgørelse af lov om integration af udlændinge i Danmark; Integration Act)으로, 신규 이민자들이 덴마크 시민과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덴마크 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덴마크 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하고, 이민자 유형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한다.⁹⁾

7) <http://www.nyidanmark.dk/en-us/legislation/legislation.htm>

8)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33236>

9)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33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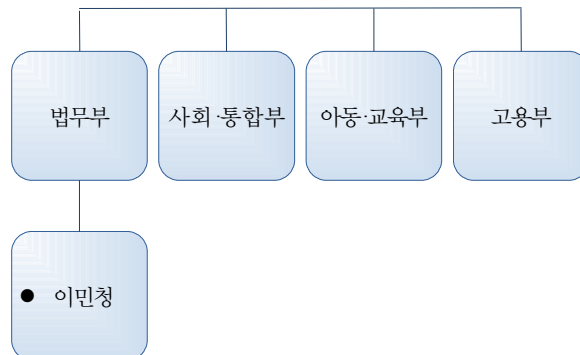
2. 추진체계

2011년 10월 출범한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극우 세력이 주도해 온 이민정책이 종결되었다는 강한 신호로 ‘난민·이민·통합부’를 폐지하였다(Adams, 2011). 난민·이민·통합부의 기능과 300명의 직원들은 대부분 ‘사회·통합부’와 ‘법무부’로 분산되었고, 일부는 아동·교육부와 고용부로 배치되었다. 덴마크의 이민자 사회통합관련 업무는 사회·통합부가 법무부, 이민청, 아동·교육부, 고용부 등과 분업과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덴마크 정부의 역할 분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무부(Justitsministeriet: www.justitsministeriet.dk; Ministry of Justice): 난민, 인도적 거주, 가족 재결합, EU회원국 시민의 거주, 덴마크 국적, 단기 사증 등의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이민청(Danish Immigration Service: www.nyidanmark.dk): ‘난민·이민·통합부’ 산하에서 난민, 가족 재결합, 취업허가 등의 집행업무를 관장하였으나,¹⁰⁾ 난민·이민·통합부가 해체되면서 이민청 조직도 분할되었다. 임시 주소를 통해 조직 개편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가족 재결합 사례, 사증 및 기타 출입국 관련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난민 업무는 변함없이 처리하는 데, ‘난민위원회’를 임시 연락처로 하고 있다. 전문인력과 유학생 업무는 ‘고용부’에서 담당한다. 이민청에서는 ‘외국인과 통합을 위한 포털 사이트’(new to denmark, dk: nyindanmark.dk)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그림 1] 덴마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10) http://www.nyidanmark.dk/en-us/authorities/the_danish_immigration_service/the_danish_immigration_service.htm

2) 사회·통합부(Social- og Integrationsministeriet: www.sm.dk;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Integration): 통합정책, 급진화 방지, 통합 연구가 사회·통합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면서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라는 명칭이 '사회·통합부'로 바뀌었다. 사회통합부는 '난민·이민·통합부'에서 이관된 업무 이외에, 사회 안전과 복지 시스템에 대한 중앙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시민들은 노동 및 다른 요소들과 관계없이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모든 시민은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초 위에 사회·통합부는 주로 위협에 처한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인, 연금생활자,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 약물중독자 등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사회·통합부는 양성평등 업무도 담당한다.

3) 아동·교육부(Ministeriet for Børn og Undervisning: www.uvm.dk; 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 제2언어로서의 덴마크어 교육 업무는 아동·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아동·교육부는 정부의 교육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교육부의 업무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아동·교육부의 비전은 덴마크의 교육 기관이 교육적·개인적·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4) 고용부(Beskæftigelsesministeriet: www.bm.dk; Ministry of Employment): 난민과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 '안내 프로그램'(introduction programmes)을 포함하는 교육제도는 고용부로 이관되었다. 또 영주권제도, 선별등재방식 명단(Positive List), 급여상한제도(Pay Limit scheme), 오페어 스테이(Au-pair stay),¹¹⁾ 직업, 학생 체류허가 등 취업, 유학을 근거로 발급되는 '체류허가'도 고용부가 맡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고용부는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고용과 근로조건, 근로시 안전과 건강, 산업재해, 경제적 지원, 고용 지원 등 고용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고용부는 고용법 및 근로시의 안전과 건강, 산업 재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과 프로그램을 집행할 있다. 실업 수당, 사회적 지원(social assistance), 질병 수당(sickness benefits), 직업상 재활 프로그램 참여 수당(allowances in connection participation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mes), 산업 재해 수당과 같은 노동 및 고용 관련 수당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1) 언어 공부를 목적으로 가사를 도와주면서 숙식과 경우에 따라 약간의 용돈을 받으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IV.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1.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

‘사회·통합부’에서는 아직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발표한 바 없으므로, 여기서는 ‘난민·이민·통합부’의 정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난민·이민·통합부에서는 2009년 ‘사회통합, 아홉 가지 중점 영역’(Intergration 2009, Nine Focus Area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보고서는 덴마크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의 아홉 가지 핵심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1) 시민권과 통합(citizenship and inclusion): 차별금지, 다양성 홍보, 이민자 급진화 방지라는 세부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차별금지 차원에서 ‘덴마크 인권 기구’(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의 주도 하에 새로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인종과 종족에 근거한 차별을 막기 위해 ‘동등처우위원회’(Board of Equal Treatment)를 설립하였다. 또한 다양성에 대한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민자 급진화 방지를 위해 난민·이민·통합부 내에 ‘통합과 급진화 방지국’(Division for Cohesion and Prevention of Radicalization)을 신설하였고 “공동의 안전한 미래”(A Common and Safe Future)라는 실행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 신규 이민자 통합: 덴마크 정부는 “기회의 사회”(Societies of Opportunities)라는 슬로건 아래 신규 이민자 사회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신규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논의는 주로 노동시장과 연계된 덴마크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어 시험을 통과한 신규 이민자들에게 지방정부가 특별한 규제 없이 보조금(4,300-5,000유로)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안내 프로그램’을 통해 18세 이상의 신규난민들과 가족 재결합 이민자들에게 주 당 최소 37시간의 취업 관련 덴마크어 교육을 3년 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통합법에 의거한 덴마크어 코스(Danish Cours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난민들과 가족 재결합자는 물론 EU 회원국 출신 외국인들에게도 덴마크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난민의 주거문제에도 정책적 관심을 쏟고 있다.

3) 새로운 취업 이민: 이주노동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가족 패키지’(family packag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동반가족에게 덴마크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사회는 그 이민자들에게 덴마

크 사회를 안내해주기 위한 호스트 가족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민자 자녀를 위한 육아시설, 학교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덴마크어’(Online Danish)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어를 모르는 이민자들을 위해 덴마크 입국 전 덴마크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온라인 코스는 영어, 독일어, 폴란드어로 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4) 여성이민자: ‘여성이민자’라는 사회통합영역은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취업률이 덴마크인보다 9%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덴마크 출신 여성은 76%가 취업하고 있는 반면, 여성 이민자들의 취업률이 59%에 그친다는 현실에 기초한다(OECD, 2011). 또한 덴마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한(통합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에 비해 학교나 회사에서 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총 5,600만 크로네를 투입하는 등 여성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명예에 기초한 갈등(honor-based conflicts)과 강제 결혼 예방을 위해 핫라인 상담전화를 설치함은 물론 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부양자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고용부 산하의 ‘인종적 소수자의 고용을 돕기 위한 전국 전문가 센터’(National Expert Center for the Employment of Ethnic Minorities)가 각 지자체의 여성이민자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 이민자 아동과 청소년: 덴마크 정부는 2008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민자 아동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했다. 그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36,000명의 이민자 아동과 11,000명의 이민자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소외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수는 덴마크 거주 이민자 아동·청소년의 25%에 해당한다. 덴마크 정부는 그들이 소외된 원인을 이민자 부모들의 낮은 교육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덴마크 사회에 대한 낮은 지식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위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모든 청소년을 필요로 한다”(We need all youngsters) 프로젝트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이민자 청소년들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이민자 중 역할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해 동기 부여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며, 학교 과제를 도와주는 온라인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리텐션 캐러밴’(Retention Caravan)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부와 난민·이민·통합부가 협력하여 이민자 청소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였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향상시키고, 이민자 부모와

그 자녀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그 외에 이민자 부모들의 학교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와 내무부와 협조 속에 홈스쿨 카운슬러를 이민자 가정에 파견하고, 이민자 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코스도 제공한다.

6) 이민자들의 고용: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통합과 고용 증대를 위해 덴마크 정부는 이민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주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홍보 전략 및 멘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그것에 포함된다. 다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충원한 회사의 사례들을 모아 적극 홍보하였다.

7) 낙후된 지역을 풍요로운 지역으로: 이민자 밀집주거지역이 계토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난민·이민·통합부는 자체 도시화 지수를 개발하여, 낙후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변 학교 시설 개선에 노력하였다.

8) 통합정책의 효율성 강화 및 지식 공유: 덴마크 정부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효율성을 고취하고, 그것을 위한 지식 공유를 위해 이민자 통합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하였다.

9) 통합의 국제협력: 덴마크 정부는 국제이주의 증가와 그로 인한 이민자 통합 문제를 단순히 덴마크 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국제협력의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는 주변 노르딕 나라는 물론 유럽연합, OECD와도 협력하고 있다.

2009년 SGI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에서 덴마크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총 4등급 중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민정책을 살펴볼 때 덴마크는 혼합된 기록(mixed record)을 보인다. 덴마크의 실업률이나 고용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덴마크 노동시장의 일반적 상황이 그다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덴마크인에 비해 외국 출신 인구의 상황은 훨씬 나쁘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전체 실업률이 4.8%이었지만, 외국 출신 인구의 실업률은 9.8%에 달했으며, 고용률은 각각 77%와 60%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한 가지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현재 덴마크 통합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덴마크 정부는 이민자들의 노동시장통합을 돕기 위해 교육과 재교육, 언어교육과 학교 제도에서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이민자 자녀)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 정책들은 이민자 사회통합을 돕는 것이지만, 다른 몇몇 정책들은 통합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민자들이 덴마크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예컨대, 최근 강화된 이민 관련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여 가족 재결합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많은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매우 엄격한 ‘사증’ 발급 규정은 또 하나의 심각한 장애물이다. 심지어 덴마크에 수 십년 간 거주하고 성공적으로 덴마크 사회에 통합된 이민자의 가족이 덴마크를 방문할 때도 사증이 거부되곤 한다. 그리고 많은 덴마크인들(Danes)의 이민자 차별이 존재한다. 2001년 이후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인 내부의 외국인혐오적 태도 근절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덴마크에서 외국 문화의 수용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중도 우파 연립정부와 극우파 성향의 덴마크국민당 간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대신, 정부는 소위 “덴마크적 가치”(Danish values)를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교육 관련 계획들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민자를 지원하는 한편, ‘사증’과 ‘덴마크 중심적 문화정책’으로 이민에 대한 장벽을 치고 있다(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2009: 8).

2. 시민 대상 사회통합정책

덴마크에서 결혼이민자는 덴마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 급여의 경우 영주권자나 영주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므로, 결혼이민자는 덴마크 국민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덴마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기존 국민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덴마크의 시민 대상 주요 사회통합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정책: ① 공공부조: 덴마크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이념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실업자에 대해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중점을 둔다. 공공부조 급부 수준을 낮추고, 수급 조건을 강화하여,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고취시키고, 각종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여 유급휴가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② 사회보험: 덴마크는 사회보험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활성화급여, 재활수당, 휴가 수당, 질병 수당, 조기퇴직연금, 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 ③ 사회서비스: 덴마크는 다양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가 산출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에 주목하여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어 노동시장 활성화, 직업훈련, 기술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다.¹²⁾

2) 가족정책: 덴마크의 가족 지원 서비스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노동 시장 및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의 동등한 권리와 균형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다.¹³⁾

① 보육정책: 덴마크는 보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학령기의 초중등교육 및 생애 주기에 걸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생후 30주기까지 자녀의 연령에 맞는 보육을 보장하고,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아동의 융화나 특수 교육학습법에 주안점을 둔 특수목적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② 출산장려 정책: 덴마크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출산휴가, 출산휴가비, 배달, 육아보조금 등을 제공한다. ③ 유급휴가제와 직장순환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유급휴가제와 직장순환제로 육아휴가, 교육 훈련휴가, 안식휴가의 유급 휴가제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④ 기타 가족정책: 기타가족정책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한부모가족지원정책으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양육을 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받는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지원, 추가아동수당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둘째는 미혼모가족지원정책으로, 미혼모가정을 가족형태로 인정함으로써 모성보호법, 임신보호법 등 일반 기혼 여성과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¹⁴⁾

3) 고용정책: 2004년 덴마크에서는 사회 통합정책에 전체적인 변화를 초래한 개정 ‘통합법’(Integration Act)이 시행되었다. 통합법은 노동시장 통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거주허가를 받고 2달이 지난 모든 이민자들에게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세부 내용은 개인적인 계약에 기초한다. 그 계획에 따르지 못할 경우, 안내 수당이 30%까지 삭감될 수 있다. 그 프로그램들은 이민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에 대한 노동시장의 요구를 결합하여, 관련 언어 교육 및 기타 활발한 활동의 지원을 포함한다. 그 법률에는 활동 활성화(activation activities)의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있다. 첫째 범주는 이민자의 기술과 자격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관점에서, 카운슬링과 참여 교육을 행한다. 그것은 참여 교육 훈련이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는 넓은 범주로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이민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으로, 최대 13

12) <http://www.denmark.dk/en>

13) <http://english.sm.dk/social-issues/children-and-youth/familypolicies/Sider/Start.aspx>

14) Directgov. <http://www.direct.gov.uk>

주(특정 상황에서는 26주) 동안 행해진다. 셋째 범주는 고용에서 1년간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일주일에 37시간은 관련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수해야 한다. 그 프로그램은 연장이 가능하며, 적어도 3달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행된다. 새로운 통합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동시장 통합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기 위해 ‘통합정책 관련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였다. 신규 이민자들의 고용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1인당 기본으로 450유로씩 지방자치단체에 매달 지급한다. 그리고 이민자가 ‘안내 기간’ 동안 보조금을 받지 않는 직업에 고용되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4,200유로를 받을 수 있다. 그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자의 빠른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하는 데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은 2008년 1월 1일 추가 조항을 포함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본수당에 더하여 실제 통합 비용의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안내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을 거의 100% 돌려받을 수 있다(OECD, 2007: 141-142). 2002년의 덴마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파트너로 하여 비서구 국가 출신의 미취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단계 모델’(stepmodel)을 개발하였다. 그 단계 모델은 신규 이민자들과 기존에 덴마크에 몇 년간 거주한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일반적 노동시장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이민자가 밟아야 하는 각 단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다. 첫째 단계는 언어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소개로, 노동이 가능한 수준의 언어능력 획득을 목표로 한다. 둘째 단계에서 이민자는 사회적인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훈련생으로 일하는 단계에서 참여자가 언어 수준이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그것에 대해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요컨대, 덴마크 정부는 취업, 특히 초기 노동시장 통합에서 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OECD, 2007: 143-144).

4) 자녀교육정책: 덴마크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 등과 함께 비교적 차별이 적은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OECD, 2010: 198), 덴마크에서는 1990년대부터 공립학교(public school)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이 증가하였다. 그것은 덴마크의 부모들이 이민자 비율이 낮은 학교로 자녀들을 보내기를 선호했기 때문이다(OECD, 2010: 166). 서로 다른 사회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범주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며 일련의 기술들을 요한다. 이는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다. 덴마크의 2006

년 조사에서 약 75-80%의 교사들이 이민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스스로 충분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OECD, 2010: 174).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이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적·문화적 배경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덴마크에서 ‘문화 간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은 교육 시작 전에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또한 교사 교육에서 덴마크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다(OECD, 2010: 175). 학생들의 언어적 필요성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교습법을 채택하는 것은 현재 교사 교육의 필수 과정이 되어 있다(OECD, 2010: 177).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이민 및 외국인 정책 개선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도미향·이기숙·강기정·이무영·박경애. 2009. 『가족정책론』. 신정
- 박성혁·성상환·곽한영·서유정. 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유길상·이규용·설동훈·박성재. 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Adams, William Lee. 2011. “A Blow to Europe’s Far-Right: Denmark Reshapes Its Immigration Policies.” *Time*, October 6, 2011.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ition. London: The Guilford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uddleston, Thomas, and Jan Niessen. 2011.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III*. Brussels: British Council and Migration Policy Group.
- Ministry of Refuge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Affairs in Denmark. 2009. *Integration 2009: Nine Focus Areas*. Copenhagen: Ministry of Refuge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Affairs in Denmark.

- Moeslund, Karina, and Elisabeth Strasser. 2008. *Family Migration Policies in Denmark*. Vienna: International Centre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 Niessen, Jan, Thomas Huddleston, and Laura Citron. 2007.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06-2007*. Brussels: British Council Brussels.
- OECD. 2007. *Jobs for Immigrants (Vol. 1)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Australia, Denmark, Germany and Sweden*.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10. *Equal Opportunities: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the Children of Immigrant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1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11*.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Seol, Dong-Hoon. 2006.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Immigration Process and Adaptation." *Asia-Pacific Forum* 33: 32-59.
-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SGI). 2009. *Security and Integration: Integration Report 2009 — Do Policies Support the Integration of Migrants into Society?* Gütersloh, Germany: Bertelsmann Stiftung.
- Torngren, Sayaka Osanami. 2011. *Attitudes Towards Interracial Dating and Marriages*. Malbo, France: Malbo Institutue for Studies of Migration, Diversity and Welfare.

(2012. 10. 1. 접수; 2012. 10. 17. 수정; 2012. 10. 31. 채택)

Denmark's Immigration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ystem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youngha Lee

University of Seoul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Denmark's immigration policies, especially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immigrants,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We mainly focus on immigrants-targeted policies and Danish citizens-targeted ones in order to overview immigration policies with relation to overall social integration policies. While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Integration takes main responsibility of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those tasks are shared among the Ministry of Justice, the Danish Immigration Service,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The new government launched in October, 2011 abolished the Ministry of Refuge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Affairs. Therefore, the functions of the Ministry of Refuge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Affairs were mostly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Integration as well as the Ministry of Justice. Some tasks were partly relocated to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Since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Integration has yet announce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we look into the policies set up by the Ministry of Refuge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Affairs. The Ministry formulated nine focus areas such as citizenship and inclusion, newly arrived under the Integration Act, new immigration labor, women with immigrant background, children and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 employment of immigrants, from deprive residential area to prosperous urban neighborhood, effective measure and knowledge shar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tegration.

Keywords: Immigrants, Immigrat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mmigration Laws, Immigration Agency, Denmark

연구논문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 결정요인 분석*

고재훈**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이민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인구학적 특성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한 저개발국 출신이라는 점이다. 반면 한국은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정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신규로 진입하는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민자의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계량적으로 비교한다. 정보격차를 접근과 활용의 두 측면으로 나누었고 인구학적 특성, 계층,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 변수를 주요 분석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적 결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신국가와 출신국가에서의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접근 측면에서 유의하던 가계소득 등 종래의 변수들이 활용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은 접근에만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활용 측면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제어: 이민자, 정보격차, 정보접근, 정보활용, 출신국

* 이 글은 2012년 6월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다듬은 것이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jh.ko@jbnu.ac.kr.

I. 서론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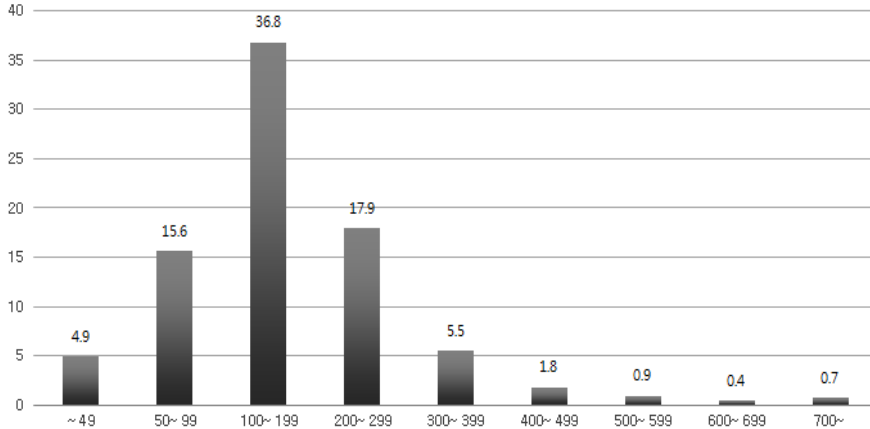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을 향한 정책적 관심과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두 유형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이다. 수적으로는 이주노동자가 훨씬 많지만, 시민권의 측면에서 일시적인 정주와 영구적인 정착을 엄밀히 구분했을 때 정책적 관심이 우선되는 이들은 결혼이민자이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로의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자유 이민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전지구화 과정을 겪으면서 나타난 시장의 불균형이 가져온 특징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그 독특한 속성을 갖게 된다. 또 한국은 이민국가로 분류하기에는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여전히 낮다. 소위 다문화는 발전도상의 규범적 지향으로는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다(설동훈, 2009). 이방인이라는 이민자의 기본적 난점에 더해 이상의 조건들은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사회의 절박한 소수자들 중 하나로 등장시켰다.

많은 소수자 집단들이 그렇듯이 이들이 당면하는 사회적 소외의 형태는 그들 각각에 대한 특징적인 차별과 배제뿐만이 아니다. 종래의 일반적인 사회적 소외의 형태 또한 고스란히 직면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소득분위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결혼이민자를 신소외계층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자들은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들일 뿐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소외계층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이들 결혼이민자들을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받아들인 지금, 그 다음 문제는 사회의 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그들이 소수자로서 지닌 특성들이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신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언어와 출신국별 문화의 상이성 같은 소수자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들이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업적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그 귀속적 특수성이 지속적 불평등 구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정책적 과제이다.

〈그림 1〉 결혼이민자의 소득 분포, 2009년

(단위: %, 만원)



자료: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전지구화와 궤를 같이하는 여러 지구적 차원의 변화 가운데 또 하나가 정보화이다. 인터넷과 같은 지구적 연결성의 증가는 국제무역, 국제이주의 한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다(Castles, 2009).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의 기술들과는 달리 이민자와 내국인 사이의 정보능력의 차이는 많은 이민국가에서 일반적인 일이다. 카스텔(Castells, 2004)은 정보네트워크가 사회의 가치를 독점하고 그 외의 부문을 제외시키는 것이 지구적 지배의 핵심임을 주장하며, 지구화와 정보화가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 같은 괴리는 많은 이민 국가들에서 연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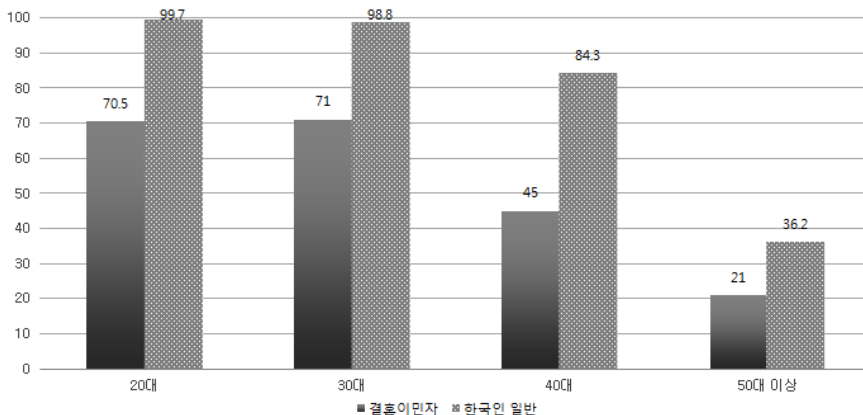
한국사회 역시 정보화가 대단히 급속히 이루어져 세계에서 손꼽히는 높은 수준의 정보화 사회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기존의 소외들이 가져오는 격차나 빈곤에 더해 새로운 소외의 형태로서 또다시 격차와 빈곤을 매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바로 그것이다. 정보 격차란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분리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Schiller, 1996), 정보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것이 전개되는 사회의 문제가 반영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상의 정보화가 진행된 사회에서 계층적 격차에 핵심적인 부분인 생

산과 학습에 정보의 접근과 활용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Norris, 2001; DiMaggio, Hargittai, Celeste and Shafer, 2004). 더군다나 노동의 전산화, 정보화는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계층적 분절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며 (Autor, Katz and Kearney, 2006)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자들이 자본 축적에 관해 그들의 행위 단위인 가게 내에서의 역할이 보통 간접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도움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 접근과 활용에 능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원에 수혜를 받게 되며(DiMaggio *et al.*, 2004; Hargittai, 2003)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미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극히 일반적인 접근 경로가 되어버린 한국에서의 정보 접근은 단순히 향유의 차원을 넘어서 개개인의 삶의 기획이 매개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진다. 예컨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인터넷과 같은 정보 공간은 단순히 시간보내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계발 활동, 진로준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다(김명아, 2007). 특히 인터넷 이용은 이민자에게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데, 이주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오래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산업적 발전의 상위 단계인 정보화가 수준 이상으로 진행된 국가들이며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민에 관련한 공식적인 행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다(Ono and Zavodny, 2007).

〈그림 2〉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비교, 2009년

(단위: %)



자료: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의 가치는 반드시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왜 ‘다문화 가정’의 정보이용을 논의해야 하는가? 정부의 예산이나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뒤늦게 올라타기 위한 또 하나의 ‘열풍’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한건수, 2009)이라는 지적이 그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의 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보 격차는 빈곤의 재생산 구조라는 점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의 첫 단계부터가 결혼이민자의 socinet 가입이다. 복지지원체계가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회와 자원들은 거의 인터넷을 통해 제시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담론의 전개와는 별도로 명백한 신소외계층으로서 결혼이민자들의 정보격차가 중요한 것이다.

많은 이민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여러 소수자들의 정보 격차 연구 중 하나로서 이민자들의 정보 격차에 대한 연구도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화에 있어서는 세계 수위를 달리는 국가인 만큼 일반적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수자들에 대한 정보 격차의 연구에 있어서는 그보다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자들에 있어서 정보 격차의 문제를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의 정보 격차 요인을 알아봄으로서 결혼이민자의 어떤 요인들이 정보 격차를 가중시키고 어떤 요인들이 정보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정보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돕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의 개발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정보사회의 특징적 구분에 대한 20세기적인 정보지식사회에 대한 예견들은 미래 지향적인 만큼 추상적이었고 그래서 일관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바로 지금까지의 변화에 의해 그 특징적 단절의 지점이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지목으로 수렴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보 그리고 정보네트워크의 전자화(digitalization)이다. 이처럼 정보사회의 현재 진행을 자신들의 이론에 반영한 이들인 웹스터(Webster, 2006)와 카스텔(Castells, 2004)은, 그 각각 연속론적 입장과 단절론적 입장이라는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정보격차가 — 그것이 새로운 것이든, 새롭게 생긴 것이든 —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의 원인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제기되었다. 가장 먼저 ‘지식 격차 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로 불리는 인적 자본 변수에 대한 지목은 1970년 티치너·도노후·올리언(Tichenor, Donohue and Olien, 1970)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는 본격적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닌 매스미디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결과였지만, 2001년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의 정보격차 조사연구에서도 그 원인으로 지목됨으로써 그 유효성이 폭넓게 받아들여졌다(오미영·정인숙, 2005). 이 이론이 지목하는 결정 요인은 분명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개인 역량의 격차가 설명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인적 자본을 그 변수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하게 사회경제적 배경을 그 핵심적인 설명으로 삼았지만 보다 이념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실러(Schiller, 1996)와의 비교에서 더 분명해진다. 그의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를 구분하는 설명들은 이후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의 급속한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격차의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접근성을 상정하는데 커다란 이론적 자원이 되었다. 인터넷이 월 요금제로 지불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은 정보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도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DiMaggio *et al.*, 2004). 또 웹스터(Webster, 2006) 역시 20세기 탈산업사회와 정보사회 논쟁에 있어서 21세기 인터넷 환경의 양상을 정확히 예견한 인물로 실러(Herbert I. Schiller)를 꼽으며 그의 주장처럼 정보 격차란 결국 기존의 사회 격차가

연장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한편 인터넷 환경의 만개는 벨(Bell, 1973)이나 실러(Schiller, 1996)에 의해 이루어졌던 거시적 사회변동의 논쟁과는 다른 양상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이 프렌스키(Prensky, 2001)의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이민자’(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주장으로 촉발된 논쟁이다. 프렌스키(Prensky, 2001)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수용과 활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들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는 다분히 세대론적인 함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경험 연구자들의 반박(Hargittai, 2010)을 포함한 커다란 논쟁으로 불거졌었는데, 논쟁의 경과는 결국 프렌스키(Prensky, 2001)의 지적이 연령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험적 증거들과 세대와 성별과 같은 성장기의 환경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유효할 수 있으며 특히 선진국일수록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현으로 접근성의 격차가 양적으로 완화되면서 개인의 지식 정도나 계층·계급의 배경과 상관없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또 이 같은 경험 연구에 있어서의 논쟁과는 별도로 카스텔(Castells, 2004) 역시 국가 차원의 환경 차이가 개인의 격차를 초래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환경 변수의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이민자의 정보격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노·자보드니(Ono and Zavodny, 2007)는 미국에 이주한 이민자들의 정보격차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이민자는 정보접근과 활용에서 모두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 일반적인 정보격차가 줄어드는 동안 이민자와 자국민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이 거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이민자들은 다른 국가에서와는 달리 컴퓨터 자체의 이용도 저조했다. 다만 한계는 이민자들과 자국민 간의 인터넷 이용의 태도가 다른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치스윅·밀러(Chiswick and Miller, 2007)는 호주에서도 이민자와 내국인의 정보격차를 확인하였고 언어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다만 호주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컴퓨터 사용의 정도가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럽·지들릭(Korupp and Szydluk, 2005)은 독일 내 터키 이민자들을 연구하였다. 여타 연구와 동일하게 내국인과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역시 인적자본과 가족배경,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효성(2003)은 재미 한국인들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과 정치적 참여 간에 경로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정치적 참여와 뉴스이용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는 발견하였지만 미약하였고 뉴스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육수준, 체류기간, 영어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결론을 짓는 해외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물론 타당한 것이지만 다른 통제적 변수들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고려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이민의 주류를 이루는 히스패닉 계열은 그 출신국 배경이 가지는 미진한 정보화의 속성상 이러한 전반적인 격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아시아의 경우 언어와 국가가 다를 경우 그들이 이주하기 이전에 갖추게 되는 정보역량이나 또는 그들에게 유리한 인터넷 콘텐츠의 존재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이는 변수의 범주를 인종이 아닌 국가로 바꾸었을 때 언어와 정보접근격차를 매개하는 변수들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이 연구가 자료로 삼고 있는 ‘2009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과는 정보 접근의 수준이 한국의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와 연령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정보 격차 문제의 특성과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라 통합의 정도가 달라지는 이민자 문제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선불리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박수현·박선주(2006)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내국인 아동들에 비해 정보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그들이 사회의 일반적인 경로에 동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또 격차 집단으로 거론된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5년에서 10년 사이의 거주기간을 가진다는 사실을 볼 때, 이민자의 정보격차 영향 요인들 중 하나로서 잘 알려진 거주기간 변수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통합의 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으며, 구조적 소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코 당연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함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에 이수상·장임숙(2010)은 부산·경남지역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정보리터러시 격차(information literacy gap)를 야기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정보리터러시 격차는 연령, 결혼여부, 직업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의 차이, 정보기술에 대한 적응력,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성, 사회연결망 등의 개인적 차이와 함께 기술적·경제적·사회적·정책적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재·이수상·조용완·장임숙(2009)은 부산경남지역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비교 조사하였다. 두 집단 모두 정보 리터러시가 낮게 나왔으며 정보활용교육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언어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도농 간의 격차와 성별 차이로 생각되는 두 집단 간 차이도 확인하였다. 또 부산경남지역 결혼이민자 중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은 게이트키퍼들을 면담조사하였는데, 자국의 인프라가 좋지 못하였고 전적으로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한국어능력, 교육지원, 가정의 우호적인 분위기, 활발한 사회참여로 나타났다(이용재·조용완, 2010). 조용완·이수상(2010) 역시 부산경남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리터러시의 정도를 조사하였고 위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미리·황윤자(2011)의 연구도 이민자들의 정보 격차에 있어서 이용과 참여를 따져봤을 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변수를 통제하는 정도의 연구로는 이루어지지 못해 종래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는 도농 간 인프라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참여의 양상이 지역별로 갈리는 것을 비교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요인을 충분히 밝힐 수는 없었다.

이상의 국내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민자의 정보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외국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으며, 또한 사회의 일반적인 정보 격차의 요인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 격차보다 이들 집단에서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상기한 영향 요인의 축적 정도가 훨씬 빈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한계 속성인 언어와 출신국에 따른 문화적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상담사례를 통해 국가변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지만(이용재·조용완, 2010) 이를 고스란히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자료의 편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연구(이용재 외, 2009)에서도 중국인들이 더 정보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두 차원을 적절히 통제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상기한 연구들의 경우 크게는 접근성을 위주로 한 경우와 리터러시(literacy) 개념을 적용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단지 접근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격차의 하위 범주들에 대한 개념적 확장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리터러시 개념은 격차의 여러 차원들을 포괄하는 충분히 확장된 개념이지만, 애초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함의하는 결과적인 자원 조달의

문제로부터는 그 개념의 추상성이 커 정책적 지점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지는 내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경우 상기한 개념상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결혼이민자의 전수 조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다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 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개념

정보 격차란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분리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보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것이 전개되는 사회의 문제가 반영되는 것이다. 컴페인(Compaine, 2001)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분리되는 그 지점을 접근성(access)으로 정의한다. 물론 정보화의 최우선 조건은 정보기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며, 20세기 후반에 상용화된 인터넷의 등장은 정보접근성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제한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이용에서의 격차는 기존 사회 계층에서의 불평등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연령, 성별, 인종, 소득, 교육수준은 이러한 격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원인들이다(Norris, 2001).

또 한국이나 싱가포르, 넓게는 미국과 같이 유비쿼터스라 불릴 정도의 광범위한 매체의 보급이 이루어져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도(Ono, 2005) 여전히 실질적인 이용 격차(usage gap)는 존재한다(Hargittai and Shafer, 2006). 가장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자인 대학생 집단에서도 이러한 격차가 관찰 되었는데, 특히 웹을 통한 정보 생산 활동에서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들 사이의 간극이 존재했다(Hargittai and Walejko, 2008).

물론 경제적 조건은 여전히 접근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매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컴퓨터와 같은 장비의 보유를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장비가 센터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Noll *et al.*, 2001).

문화적 조건, 특히 교육 수준은 단순히 접근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정보의 이용과 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 언어구사력, 정보탐색과 이해력 및 통합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디마지오 등(DiMaggio *et al.*, 2004)에 따르면 이용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인터넷 활용 유형(type of activities)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건강, 재정, 직업, 뉴스와 관련된 인터넷 이용, 즉 자본향상활동(capital-enhancing activities)이 활발한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게임, 도박, 오락 등을 위한 여가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인터넷 이용이 가장 활발한 20대 초반 이용자 집단에서도 발견되었다(Hargittai and Hinnant, 2008).

이처럼 정보 격차의 논의들은 크게 접근성을 중심에 두는 연구에서 활용성을 중심에 두는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셀윈(Selwyn, 2004)은 이분법적인 접근을 넘어 위계적인 접근(hierarchical approach)을 통해 정보접근성과 정보의 이용, 그리고 그 결과를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타이(Hargittai, 2002)는 2차적 정보격차 개념을 논의하면서 인터넷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획득하는 능력에 있어서 연령 및 교육수준 등에 따른 격차를 경험적으로 입증했다. 디마지오·하지타이(DiMaggio and Hargittai, 2001)도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기술적인 의미에서만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그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 인터넷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기업, 정부, 비정부기구 등 관련 집단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급속도로 재형성되고 재구축되는 기술과 서비스의 총체이기 때문에, 격차란 온라인 이용인구 내부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지역, 세대, 인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조건은 각종 콘텐츠 및 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각 사회적 집단의 소수 계층, 즉 여성, 농어민, 중장년층, 소수 인종 등에게 유용하고 적합한 콘텐츠가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면화된 정보격차의 원인을 탐색하는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실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Selwyn, 2004).

실제로 이민자나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네트워킹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지만(Goolsbee and Klenow, 2002)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자본향상활동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사고 위주의 네트워크가 전체적인 활용 격차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연구주제이다(Ono and Zavodny, 2007).

이처럼 정보격차의 개념적 의미가 확장되고 접근성 이후의 영역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주요 격차 요인들이 접근성 이외의 다른 차원에서 정보화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는 어떤 영향 요인들이 있는지가 연구문제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발전 방향은 국내의 연구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민영(2011)은 한국에서 정보의 접근, 활용, 참여의 측면 모두에서 성, 연령, 교육, 소득수준의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정보 격차 연구도 점차 진행되고 있으며, 다문화로 통칭되는 이민자들의 정보 격차 역시 소수자의 측면에서 격차 현상을 규명하려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2009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접근수준과 활용 범위와 정도가 일반 한국인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편으로 정보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보격차는 접근의 차원을 넘어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제 활용 정도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보격차란 정보 네트워크로부터의 ‘소외’ 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초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등에서의 불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Castells,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정보격차는 정보 격차 내부의 단계들인 접근성과 활용성을 모두 포괄하면서 동시에 그 높낮이의 기준을 자본향상활동(capital-enhancing activities)의 정도에 두는 것으로 개념 짓고자 한다.

IV. 자료와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전 지역의 결혼이민자이거나 혼인귀화자인 이들 중 배우자가 귀화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이들이다. 조사대상자는 행정안전부의 협조 아래 2009년 5월 통계(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16만 7천 명 중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귀화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총 15만 4천명의 조사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현지에서 살고있는 결혼이민자는 13만 1천여 명으로 확인하였고 13만 1천여 명 중 7만 3천여 가구에 대해 설문지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완료율은 55.9%이다.

설문지는 정보 관련 문항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에 필요한 여타 문항

들이 다수 포함되어, 총 56개의 문항과 관련 하위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사례는 설문이 완료된 7만 3천여 명의 사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성한 13만 1천여 사례로 그동안 연구되었던 모든 결혼이민자의 정보 격차 관련 연구보다 월등히 자료의 양이 많고, 전국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 자료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 모형은 정보 격차(접근, 활용)를 종속 변수로 하고, 구조적 속성 변수·사회경제적 변수·인적 자본 변수·인구학적 변수·사회적 자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보 접근성의 분석에는 접근 유무에 영향 요인들 간의 차이를 보고자 하므로 종속 변수가 이항 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결혼이민자의 정보 활용성의 분석에는 사례의 대부분이 분포한 낮은 점수대와 일부만 분포한 높은 점수대에 영향 요인들 간의 차이를 보고자 하므로 종속변수가 편포를 나타내기 때문에(편포도: 1.119) 이를 보완하는 로버스트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정보 격차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두 가지 변수인 접근성과 활용성의 두 측면을 각각 분석하였다.

(1) 정보 접근 격차: 정보 접근 격차 지표는 인터넷 이용 여부로 측정하였다. 정보 접근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 가구의 컴퓨터 보유여부 및 인터넷 접속여부를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컴퓨터를 보유했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 격차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터넷 사용 여부를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지표를 통해 정보접근 격차를 측정할 경우, 가정 또는 직장에서의 인터넷 사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 격차를 측정하는데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변수 값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0,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2) 정보 활용 격차: 정보 활용 격차 지표는 인터넷 활용 능력으로 측정하였다. 인터넷 활용 능력은 국내의 경우 앞선 연구들을 통해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같은 개념으로 도입된 바 있지만, ‘정보가 매개하는 빈곤’이라는 문제제기의 지점에 입각해 볼 때 그 추상성이 강하고 문제제기의 지점을 정확히 짚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하지타이(Hargittai, 2010)의 연구사례를 따라 인터넷 활용능력을 자본 향상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파악하는 자본 향상 활동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한 영화감상과 게임 등은 자본 향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위락활동에 불과하지만 검색과 정보획득, 나아가 시장에서의 참여는 확실히 정보화된 자원을 습득하는 직접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활용 능력은 자료 및 정보 획득, 이메일, 채팅, 인터넷 전화, 영화·게임 등 여가활동, 교육 및 학습, 인터넷 쇼핑, 인터넷 बैं킹, 동호회·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각각의 활용 여부를 묻는 것으로 측정한 뒤, 백승호(2003)가 시도했던 서열별 가중치 부여의 방법을 사용하되, 그 범주의 분류와 위계를 하지타이(Hargittai, 2010)의 구분에 따라 여가, 의사소통 및 교제, 사회 활동, 학업 및 업무 정보검색, 인터넷 상거래 이용으로 분류하고 위계를 구성하였다. 유형별 가중치는 여가(1점), 의사소통 및 교제(2점), 사회 활동(3점), 학업 및 업무 정보검색(4점), 인터넷 상거래 이용(5점)의 순으로 서열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변수, 이민자의 인적 자본, 배우자 변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적 자본, 이민자 출신국 유형,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이용으로 구성하였다.

(1) 미시수준

㉠ 인구학적 변수: 성별은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를 물었다. 변수는 0점은 남성, 1점은 여성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의 특성상 기존에 알려진 주요 변수인 성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남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연령은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를 물었다. 변수는 연령대 분포를 반영하

여 ‘20대 전반 1, 20대 후반 2, 30대 전반 3, 30대 후반 4, 40대 5, 50대 이상 6’으로 재구성하였다. 거주기간은 “귀하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얼마입니까?”를 물었다. 변수는 연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② 이민자의 인적 자본: 이민자 교육수준은 “귀하는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녔습니까?”를 물었다. 변수는 ‘초등학교 이하 1’부터 ‘대학교 이상 4’까지로 재구성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를 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별로 각각 물었다. 변수는 ‘매우 잘한다 1’ ~ ‘매우 서툴다 5’까지의 범주를 역순으로 바꾼 뒤 세 영역의 평균을 낸 값이다.

③ 배우자 변수: 배우자 교육수준은 “귀하의 배우자는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녔습니까?”를 물었다. 변수는 ‘초등학교 이하 1’부터 ‘대학교 이상 4’까지로 재구성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가족관계에 있어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의 항목 중 ‘배우자와의 관계’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변수는 ‘매우 만족 1’ ~ ‘매우 불만 5’까지의 범주를 역순으로 바꾼 것이다.

(2) 중위수준

①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종류와 정의는 다양하지만 오랫동안 충실한 개념화 과정을 거친 까닭에 하위 범주들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병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 콜만(Coleman, 1988)의 경우 공동체 속의 소속감으로 보았으며, 또 버트(Burt, 1992)의 경우 정보의 구멍을 메우는 존재로 파악했다. 전자는 신뢰, 후자는 연결망으로 개념 지워졌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하위범주 중 이 두 가지를 측정하고 사용하였다. 사회적 연결은 정보 접근 및 사용에 직접적인 행동의 원인이고 사회적 신뢰의 경우 정보나 정보의 수단에 대한 사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학력과 접촉빈도를 묻는 질문은 연결과 정보제공에 그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연결의 강도’로 범주화하였고, 관계에 대한 질문들은 말 그대로 신뢰의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뢰의 수준’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민자 자신의 가족과의 접촉, 지역주민들과의 접촉, 출신국 지인들과의 접촉은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 모임이나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였습니까?”를 묻는 문항의 항목 중 각각 ‘나의 가족 친척 모임’, ‘지역주민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변수는 한 주에 두 번 이상인 경우 5, 한 주에 한 번인 경우 4, 한 달에 한 두 번인 경우 3, 일 년에 두세 번 이상인 경우 2, 일 년에 한 번인 경우 1, 전혀 없을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한국인과의 관계, 출신국이 같은 외

국민과의 관계,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귀하는 모 국민, 한국인, 기타 외국인 중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골라주세요.”를 묻는 문항의 항목 중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 참석하는 사람’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변수는 각각 세 항목의 합의 평균을 낸 값이다.

②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이용: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은 “귀하는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각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를 묻는 문항의 항목 중 각각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변수는 ‘받은 적 없다 0’부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 ~ ‘매우 도움이 됨 5’까지의 값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3) 거시수준

①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 지역은 ‘동·읍·면’으로 ‘동’을 0점으로 ‘읍·면’을 1점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주요 변수인 지역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 거주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구소득은 “귀택의 월평균 총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를 물었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 총소득(단위: 원)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에서의 계층, 출신국에서의 계층은 각각 “한국에서 가장 못사는 가족(최하층)을 ①으로 하고, 가장 잘 사는 가족(최상층)을 ⑩으로 할 때, 귀하의 가족은 어디에 속합니까?”와 “모국에서 가장 못사는 가족(최하층)을 ①으로 하고, 가장 잘 사는 가족(최상층)을 ⑩으로 할 때, 귀하의 모국 가족은 어디에 속합니까?”를 물었다. 변수는 각각 0부터 11까지의 값을 가진다.

② 이민자 출신국 유형: 출신국가는 “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를 물었다. 출신국의 정보화 수준은 출신국가별로 ‘100명당 인터넷 이용 인구’를 적용한 후 ‘50명 이상’, ‘20명 이상 50명 미만’, ‘20명 미만’으로 범주화 하였다. ‘100명당 인터넷 이용 인구’의 자료는 세계은행(World Bank, 2011)의 『세계발전지표 2011』(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에 제시된 해당 항목의 2009년 지표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종속 변수	정보접근성(Y ₁)		0, 1로 측정
	정보활용성(Y ₂)		0, 1로 측정된 각 이용 형태를 누적하여 지수로 구성
독립 변수 (미시 수준)	인구학적 변수	성별(X ₁)	남자=0, 여자=1
		이민자 연령(X ₂)	만 나이
		거주기간(X ₃)	한국에 거주한 기간(개월)
	이민자의 인적자본	본인 학력(X ₄)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6=대학원
		한국어 능력(X ₅)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각각 ‘매우 잘한다’부터 ‘매우 서툴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배우자 변수	배우자의 학력(X ₆)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6=대학원
		배우자와의 관계(X ₇)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독립 변수 (중위 수준)	사회적 자본	이민자 자신의 가족과의 접촉(X ₈)	한 주에 두 번 이상인 경우 5, 한 주에 한 번인 경우 4, 한 달에 한두 번인 경우 3, 일 년에 두세 번 이상인 경우 2, 일 년에 한 번인 경우 1, 전혀 없는 경우 0
		지역주민들 접촉(X ₉)	위와 동일
		출신국 지인 접촉(X ₁₀)	위와 동일
		한국인과의 관계(X ₁₁)	상황별로 함께하는지 여부 문항들의 평균
		출신국이 같은 외국인과의 관계(X ₁₂)	위와 동일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과의 관계(X ₁₃)	위와 동일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이용	한국어 교육(X ₁₄)	교육 지원을 받은 경우 ‘매우 도움이 됨’부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받은 적 없는 경우 0
		한국사회 적응 교육(X ₁₅)	위와 동일
독립 변수 (거시 수준)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지역(X ₁₆)	도시=0, 농촌=1
		가구소득(X ₁₇)	월평균 가구소득
		한국에서의 계층(X ₁₈)	최하층이 0, 최상층이 10인 11점 척도
		출신국에서의 계층(X ₁₉)	최하층이 0, 최상층이 10인 11점 척도
	이민자의 출신국 유형*	정보화 선진국(X _{20.0})	인터넷 이용인구 100명당 50명 이상 국가인 경우 1, 아닌 경우 0
		정보화 중진국(X _{20.1})	인터넷 이용인구 100명당 50명 이하 국가인 경우 1, 아닌 경우 0
		정보화 후진국(X _{20.2})	인터넷 이용인구 100명당 20명 이하 국가인 경우 1, 아닌 경우 0
	이민자의 에스닉 배경	중국한족(X _{21.0})	중국한족 등 1, 기타 나라 0.
		중국조선족(X _{21.1})	중국조선족 1, 기타 나라 0.
		베트남(X _{21.2})	베트남 1, 기타 나라 0.
		필리핀(X _{21.3})	필리핀 1, 기타 나라 0.
		일본(X _{21.4})	일본 1, 기타 나라 0.

주: * 2009년 집계 자료. World Bank (2011).

V.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미시수준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성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대는 주로 2, 30대에 몰려 있으며 거주기간은 ‘2년~4년’이 32.5%로 가장 많고 ‘5년~9년’이 23.2%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교육수준은 63.9%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이하의 학력도 35.1%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상위 수준이 3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위 수준도 29.8%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중위수준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배우자 변수 중 배우자 교육수준의 경우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는 대다수가 만족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변수의 경우 ‘이민자 자신의 가족과의 접촉’의 경우 ‘전혀 없음’이 2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분포의 대부분이 위치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의 경우 잦은 연락으로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은 ‘전혀 없음’이 58.5%로 분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 지인들과의 접촉’ 역시 ‘전혀 없음’이 3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 달에 한두 번’이 18.3%, ‘한 주에 한 번’이 13.1%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인과의 관계에서는 상위 수준이 27.3%로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없음’ 또한 22.5%로 분포가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이 같은 외국인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없음’이거나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과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없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변수 중 한국어 교육의 경우 ‘받지 않음’이 45.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교육을 받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사회 적응 교육의 경우에도 ‘받지 않음’이 5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거시수준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거주자가 72.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6.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0~300만원 미만’이 17.9%, ‘50~100만원 미만’이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계층의 경우 중위 수준이 55.1%로 가장 많았고 중하위 수준

〈표 2〉 조사대상자의 기본 특성

변수			변수			
전체		명	명		%	
		131702			100.0	
인구학적 변수	성별		배우자 변수	배우자 교육수준		
	남성	11556		초등학교 이하	8116	6.2
	여성	120146		중학교	20719	15.7
	이민자 연령			고등학교	61458	46.7
	20-24세	25599		대학교 이상	29893	22.7
	25-29세	25242		배우자와의 관계		
	30-34세	23154		매우 불만	1252	1.0
	35-39세	22445		불만	3549	2.7
	40대	25284		보통	25372	19.3
	50대 이상	9934		만족	44352	33.7
		매우 만족	45418	34.5		
이민자 인적 자본	거주 기간		이민자 자신의 가족과 접촉	전혀 없음	36475	27.7
	1년 미만	11564		일 년에 한 번	3303	2.5
	1년	16439		일 년에 두세 번 이상	4825	3.7
	2-4년	42779		한 달에 한두 번	14902	11.3
	5-9년	30497		한 주에 한 번	24421	18.5
	10년 이상	18702		한 주에 두 번 이상	22774	17.3
	이민자 교육수준			지역주민들과의 접촉		
	초등학교 이하	10752		전혀 없음	77097	58.5
	중학교	35473		일 년에 한 번	6927	5.3
	고등학교	54792		일 년에 두세 번 이상	4659	3.5
대학교 이상	29372	한 달에 한두 번	7778	5.9		
사회 경제적 배경	한국어 능력		한 주에 한 번	5908	4.5	
	하	39291	한 주에 두 번 이상	4432	3.4	
	중	31282	출신국 지인들과의 접촉			
	상	48348	전혀 없음	40039	30.4	
	거주 지역		일 년에 한 번	8908	6.8	
	도시 지역	94939	일 년에 두세 번 이상	10598	8.0	
	농촌 지역	36763	한 달에 한두 번	24049	18.3	
	가구 소득		한 주에 한 번	17279	13.1	
	50만원 미만	6493	한 주에 두 번 이상	11365	8.6	
	50-99만원	20514	한국인과의 관계			
100-199만원	48454	없음	29621	22.5		
200-299만원	23569	하	25688	19.5		
300-399만원	7179	중	25084	19.0		
400-499만원	2324	상	35950	27.3		
500-599만원	1144	출신국이 같은 외국인인 관계				
600-699만원	579	없음	47902	36.4		
700만원 이상	943	하	26853	20.4		
한국에서의 계층		중	19557	14.8		
하	19828	상	22030	16.7		
중하	30143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인 관계				
중	72544	없음	107699	81.8		
중상	4437	하	5091	3.9		
상	1022	중	2178	1.7		
출신국에서의 계층		상	1371	1.0		
하	13782	지원 프로 그램 이용	한국어 교육			
중하	19091		받지 않음	59803	45.4	
중	78861		전혀 도움 안 됨	31173	23.7	
중상	12434		별로 도움 안 됨	15974	12.1	
상	3296		보통이다	9392	7.1	
출신국의 정보화 수준			약간 도움 됨	2370	1.8	
선진국	14910		매우 도움 됨	2296	1.7	
중진국	104251		한국사회 적응 교육			
후진국	12541		받지 않음	72957	55.4	
출신 국가			전혀 도움 안 됨	14225	10.8	
중국 조선족	39998	별로 도움 안 됨	12606	9.6		
중국 한족	35913	보통이다	11982	9.1		
베트남	25688	약간 도움 됨	2213	1.7		
필리핀	8748	매우 도움 됨	2759	2.1		
일본	5443					

과 하위 수준이 각각 22.9%와 15.1%로 나머지 분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신국에서의 계층 역시 중위 수준이 5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하위 수준과 하위 수준이 각각 14.5%와 10.5%로 나머지 분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신국의 경우 중국 조선족이 30.4%, 중국 한족이 27.3%, 베트남이 19.5%, 필리핀이 6.6%, 일본이 4.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출신국 외에 기타 국가까지를 포함하여 정보화 수준에 따라 나누었을 때에는 중국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보화 중진국이 79.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정보화 선진국이 11.3%, 정보화 후진국이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의 정보 격차 변수와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 격차 변수에 대해 모든 변수와의 관계가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시수준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위수준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변수의 경우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자본 변수들은 설정된 사회적 관계들이 모두 다 활발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변수들 역시 모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거시수준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이 농촌일수록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소득과 계층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출신국 변수의 경우 계층적 이유로 낮은 정보 접근성을 보이는 조선족이 대거 포함된 까닭에 정보화 중진국이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후진국의 경우 영어사용자들인 필리핀 출신국적이 포함된 까닭에 반대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 격차 변수와 거주기간($r=.358$), 이민자 교육수준($r=.280$), 연령($r=.280$), 가구소득($r=.214$) 등의 순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정보 접근 격차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Y ₁	X ₁	X ₂	X ₃	X ₄	X ₅	X ₆	X ₇	X ₈	X ₉	X ₁₀	X ₁₁	X ₁₂	X ₁₃	X ₁₄	X ₁₅	X ₁₆	X ₁₇	X ₁₈	X ₁₉	X _{20,1}	X _{20,2}	X _{21,1}	X _{21,2}	X _{21,3}	X _{21,4}	
Y ₁	1.000																										
X ₁	-.022	1.000																									
X ₂	-.280	-.231	1.000																								
X ₃	.016	-.122	.459	1.000																							
X ₄	.358	-.111	.030	.163	1.000																						
X ₅	.049	-.005	.223	.356	.145	1.000																					
X ₆	.280	-.046	-.236	-.083	.346	-.008	1.000																				
X ₇	.072	-.107	-.071	-.093	.031	.056	.137	1.000																			
X ₈	.072	-.063	.085	.084	.109	.140	.075	.054	1.000																		
X ₉	.055	.049	-.001	.114	.053	.053	-.033	-.021	.083	1.000																	
X ₁₀	.098	-.027	-.030	.022	.095	.018	.043	-.019	.151	.179	1.000																
X ₁₁	.069	-.013	.042	.114	.099	.172	.075	.205	.121	.109	.017	1.000															
X ₁₂	.128	.009	-.115	-.054	.067	-.075	.044	-.075	.039	.049	.197	-.321	1.000														
X ₁₃	.085	-.106	-.010	.025	.116	-.041	.071	.005	.041	.039	.049	-.008	.022	1.000													
X ₁₄	.086	.106	.203	-.152	.014	.213	.045	-.070	.057	.055	.050	-.093	.091	.036	1.000												
X ₁₅	.083	.113	-.171	-.116	.009	-.129	.023	-.071	-.042	.094	.061	-.085	.101	.023	.636	1.000											
X ₁₆	-.021	.126	-.164	-.043	-.085	-.079	-.106	-.061	-.082	.199	.015	-.022	.019	.001	.085	.096	1.000										
X ₁₇	.214	.076	-.073	.031	.226	.058	.262	.176	.123	.001	.056	.155	.008	.080	-.014	-.026	-.100	1.000									
X ₁₈	.178	.041	-.202	-.055	.133	.002	.207	.186	.060	.075	.049	.145	.017	.057	.056	.045	.068	.382	1.000								
X ₁₉	.173	-.051	.074	.122	.285	.113	.165	.075	.096	.018	.038	.095	.017	.046	-.016	.001	-.066	.212	.340	1.000							
X _{20,1}	.194	.133	.016	-.140	-.357	.116	-.112	.021	.008	-.107	-.095	-.013	-.087	-.162	-.104	-.064	-.083	-.099	-.161	-.069	1.000						
X _{20,2}	.093	.093	-.144	-.047	.184	-.082	-.013	-.046	-.045	.092	.094	-.065	.059	.024	.124	.116	.114	-.035	.096	-.042	.696	1.000					
X _{21,1}	-.145	-.026	.389	.255	-.049	.508	-.132	-.011	.141	-.027	.094	-.048	.093	-.132	-.085	-.282	-.212	-.135	-.047	-.149	.042	.339	-.236	1.000			
X _{21,2}	-.064	.144	-.470	-.278	.313	-.232	-.064	-.015	.136	.037	-.007	-.084	.084	.049	.088	.044	.205	-.092	.029	-.232	.253	-.176	-.325	1.000			
X _{21,3}	.108	.068	-.060	.015	.219	-.053	-.031	-.077	-.029	.111	.106	-.069	.089	.024	.119	.127	.106	-.036	.063	-.054	.520	.747	-.176	-.131	1.000		
X _{21,4}	.108	.004	.134	.185	.188	-.050	.059	-.057	.017	.084	.025	.047	.156	.057	.042	.022	.053	.044	.057	.088	-.405	-.074	-.137	-.102	-.055	1.000	
s.d.	0.485	0.283	10.160	4.648	0.885	1.091	0.829	0.893	2.025	1.476	1.171	1.148	0.459	1.188	1.291	0.449	1.276	1.923	2.059	0.406	0.317	0.460	0.396	0.195	0.066	0.041	
s.d.	0.622	0.912	34.017	4.925	2.788	3.192	2.941	4.077	2.523	0.799	2.032	1.579	1.135	1.017	0.928	0.840	0.279	2.221	3.723	4.443	0.792	0.113	0.304	0.195	0.066	0.041	

주: 1) Y₁, 정보접근; X₁, 성별; 여성(D), X₂, 이민자 연령; X₃, 거주기간; X₄, 이민자 교육수준; X₅ 한국어 능력; X₆, 배우자 교육수준; X₇, 배우자와의 관계; 민족도; X₈, 이민자 자신의 가족과의 접촉; X₉, 지역주민들과의 접촉; X₁₀, 출신국 지인들과의 접촉; X₁₁, 한국인과의 관계; X₁₂, 출신국이 같은 외국인과의 관계; X₁₃,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과의 관계; X₁₄, 한국어 교육; X₁₅, 한국사회 적응 교육; X₁₆, 거주 지역; 동년(D), X₁₇ 거주소득; X₁₈ 한국에서의 계층; X₁₉, 출신국에서의 계층; X_{20,1} 출신국의 정보화수준; 출신국(D), X_{20,2} 출신국의 정보화수준; 후진국(D), X_{21,1} 출신국가; 베트남(D), X_{21,2} 출신국가; 필리핀(D), X_{21,3} 출신국가; 일본(D), X_{21,4} 출신국가.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정보 접근 격차에 대한 변수별 평균

변수				평균	N	변수				평균	N
인구학적 변수	성별					이민자 자신의 가족과 접촉					
	남성			.66	11223	전혀 없음			.58	36216	
	여성			.62	117484	일 년에 한 번			.71	3247	
	F 값			8.062***		일 년에 두세 번 이상			.73	4764	
	이민자 연령					한 달에 한두 번			.69	14741	
	20대 전반			.66	24968	한 주에 한 번			.64	24166	
	20대 후반			.75	24790	한 주에 두 번 이상			.68	22609	
	30대 전반			.76	22778	F 값			220.959***		
	30대 후반			.66	21979	지인들과의 접촉					
	40대			.45	24667	전혀 없음			.62	76673	
	50대 이상			.21	9488	일 년에 한 번			.68	6854	
	F 값			3098.900***		일 년에 두세 번 이상			.71	4631	
배우자 변수	거주 기간					한 달에 한 번			.70	7720	
	1년 미만			.64	11327	한 주에 한 번			.68	5851	
	1년			.65	16175	한 주에 두 번 이상			.67	4402	
	2년-4년			.59	42036	F 값			100.924***		
	5년-9년			.65	29966	출신국 지인들과의 접촉					
	10년 이상			.65	18335	전혀 없음			.55	39781	
	F 값			98.929***		일 년에 한 번			.71	8837	
	이민자 교육수준					일 년에 두세 번 이상			.73	10516	
	초등학교 이하			.32	10301	한 달에 한두 번			.71	23877	
	중학교			.47	34574	한 주에 한 번			.67	17137	
	고등학교			.64	53711	한 주에 두 번 이상			.63	11277	
	F 값			6404.358***		F 값			539.191***		
배우자 변수	한국어 능력					한국인과의 관계					
	하			.60	38561	없음			.57	29284	
	중			.65	30645	하			.64	25482	
	상			.64	47514	중			.68	24927	
	F 값			133.411***		상			.66	35728	
	배우자 교육수준					F 값			270.847***		
	초등학교 이하			.37	7831	출신국이 같은 외국인과의 관계					
	중학교			.46	20149	없음			.57	47503	
	고등학교			.64	60399	하			.64	26664	
	대학교 이상			.82	29440	중			.69	19414	
	F 값			3418.988***		상			.72	21841	
	사회경제적 배경	배우자와의 관계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과의 관계				
매우 불만				.54	1232	없음			.62	106840	
불만				.59	3510	하			.73	5051	
보통				.57	24901	중			.84	2165	
만족				.64	43785	상			.83	1360	
매우 만족				.67	44843	F 값			296.296***		
F 값				176.805***		출신국의 정보화 수준					
거주 지역						선진국			.75	14594	
도시 지역				.63	92836	중진국			.57	101777	
농촌 지역				.61	35871	후진국			.87	12336	
F 값				7.401***		F 값			2752.970***		
사회경제적 배경		가구 소득					출신 국가				
	50만원 미만			.45	6378	중국 조선족			.52	39015	
	50~100만원 미만			.48	20197	중국 한족			.64	35211	
	100~200만원 미만			.62	47963	베트남			.56	24927	
	200~300만원 미만			.71	23369	필리핀			.82	8572	
	300~400만원 미만			.79	7121	일본			.87	5398	
	400~500만원 미만			.84	2304	F 값			1294.339***		
	500~600만원 미만			.86	1128	한국어 교육	받지 않음			.57	59513
	600~700만원 미만			.88	570		전혀 도움 안 됨			.70	30936
	700만원 이상			.91	928		별로 도움 안 됨			.72	15891
	F 값			726.779***			보통이다			.70	9302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에서의 계층					약간 도움 됨			.67	2359
하				.45	19453	매우 도움 됨			.53	2272	
중하				.60	29895	F 값			502.917***		
중상				.67	71845	한국사회 적응 교육					
상				.81	4410	받지 않음			.59	72651	
상				.65	1011	전혀 도움 안 됨			.69	14155	
F 값				1022.282***		별로 도움 안 됨			.72	12528	
출신국에서의 계층						보통이다			.71	11909	
하				.45	13528	약간 도움 됨			.69	2203	
중하				.55	18928	매우 도움 됨			.60	2737	
중상				.64	78087	F 값			313.199***		
상				.80	12380						
F 값			.69	3243	전체			.62	128707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4>에서 독립변수별 종속변수(정보접근 Y_1)의 평균 차이를 산출하고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p < .001$ 에서 모든 변수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문화 지원 교육 프로그램 변수들과 출신국의 정보화 수준 변수들이 각각 0.6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이후 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 검정에서 VIF의 값이 5 이하로 낮았으며¹⁾ 회귀분석 시 ‘단계별 진입’의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민자의 정보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널리 알려진 언어 변수와 국가 배경 변수의 각 속성들을 구분하여 분석할 목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 활용 변수와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정보 활용 변수에 대해 모든 변수와의 관계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시수준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위수준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변수의 경우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자본 변수들은 설정된 사회적 관계들이 모두 다 활발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변수들은 부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거시수준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이 농촌일수록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소득과 계층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출신국 변수의 경우 격차 변수와의 상관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변수 간 관계가 반영되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 격차 변수와 이민자 교육수준($r=.349$), 배우자 교육수준($r=.224$), 가구소득($r=.220$), 출신국에서의 계층($r=.204$) 등의 순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에서 독립변수별 종속변수(정보접근 Y_2)의 평균 차이를 산출하고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p < .001$ 에서 모든 변수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1) VIF는 공선성에 대한 대표적인 통계치이다. 대체로 이 값이 5보다 크면 공선성을 의심해야 되고 10보다 크면 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정택, 2011).

〈표 6〉 정보 활용 격차에 대한 변수별 평균

변수				평균	N	변수				평균	N
인구학적 변수	성별					이민자 자신의 가족과 접촉					
	남성		5.14	7224	전혀 없음		3.78	20640			
	여성		4.15	71232	일 년에 한 번		4.63	2242			
	<i>F</i> 값		20.928***		일 년에 두세 번 이상		4.42	3429			
	이민자 연령				한 달에 한두 번		4.59	9960			
	20대 전반		3.37	16163	한 주에 한 번		4.60	15297			
	20대 후반		4.64	18316	한 주에 두 번 이상		4.78	15071			
	30대 전반		4.81	17017	<i>F</i> 값		205.021				
	30대 후반		4.40	14231	지인들과의 접촉						
	40대		3.93	10816	전혀 없음		4.33	46873			
	50대 이상		3.48	1896	일 년에 한 번		4.14	4629			
	<i>F</i> 값		440.236***		일 년에 두세 번 이상		4.42	3243			
	거주 기간				한 달에 한두 번		4.66	5347			
	1년 미만		3.64	7156	한 주에 한 번		4.80	3924			
	1년		3.78	10285	한 주에 두 번 이상		4.68	2884			
2년~4년		4.12	24322	<i>F</i> 값		31.637***					
5년~9년		4.80	19126	출신국 지인들과의 접촉							
10년 이상		4.71	11578	전혀 없음		4.09	21342				
<i>F</i> 값		311.496***		일 년에 한 번		4.08	6141				
이민자의 인적자본	이민자 교육수준				일 년에 두세 번 이상		4.31	7596			
	초등학교 이하		2.34	3146	한 달에 한두 번		4.44	16678			
	초등학교		2.83	15677	한 주에 한 번		4.72	11386			
	고등학교		3.89	33602	한 주에 두 번 이상		4.58	7028			
	대학교 이상		5.83	25446	<i>F</i> 값		71.834***				
	<i>F</i> 값		3886.123***		한국인과의 관계						
	한국어 능력				없음		3.53	16362			
	하		3.76	22677	하		3.99	16018			
	중		3.95	19658	중		4.56	16711			
	상		5.03	30023	상		5.00	22964			
	<i>F</i> 값		1155.846***		<i>F</i> 값		723.799				
	배우자 교육수준				출신국이 같은 외국인과의 관계						
	초등학교 이하		3.28	2827	없음		4.20	26404			
	초등학교		3.31	8998	하		4.11	16813			
	고등학교		3.92	37774	중		4.29	13282			
대학교 이상		5.44	23784	상		4.86	15556				
<i>F</i> 값		1550.385***		<i>F</i> 값		172.857***					
배우자 변수	배우자와의 관계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과의 관계						
	매우 불만		3.98	648	없음		4.20	65489			
	불만		4.01	2029	하		5.05	3658			
	보통		3.72	14060	중		6.50	1805			
	만족		4.21	27774	상		6.92	1100			
	매우 만족		4.63	29441	<i>F</i> 값		583.353***				
	<i>F</i> 값		190.949***		출신국의 정보화 수준						
	거주 지역				선진국		3.99	10709			
	도시 지역		4.37	57181	중진국		4.03	57157			
	농촌 지역		3.92	21276	후진국		5.68	10590			
	<i>F</i> 값		18.101***		<i>F</i> 값		1193.707				
	가구 소득				출신 국가						
	50만원 미만		3.48	2798	중국 조선족		4.54	19600			
	50~100만원 미만		3.44	9426	중국 한족		4.11	22117			
	100~200만원 미만		3.95	28960	베트남		2.95	13597			
200~300만원 미만		4.76	16370	필리핀		3.94	6890				
300~400만원 미만		5.52	5577	일본		5.37	4650				
400~500만원 미만		6.29	1925	<i>F</i> 값		761.679***					
500~600만원 미만		6.54	954	한국어 교육							
600~700만원 미만		6.03	499	받지 않음		4.52	33084				
700만원 이상		6.12	821	전혀 도움 안 됨		4.15	21214				
<i>F</i> 값		482.102***		별로 도움 안 됨		4.09	11215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에서의 계층				보통이다		4.05	6417			
	하		3.31	8430	약간 도움 됨		4.28	1550			
	중하		4.13	17627	매우 도움 됨		3.78	1186			
	중상		4.35	47230	<i>F</i> 값		60.822***				
	중상상		4.76	3494	한국사회 적용 교육						
	상상		4.56	628	받지 않음		4.47	42383			
	<i>F</i> 값		381.237***		전혀 도움 안 됨		4.17	9590			
	출신국에서의 계층				별로 도움 안 됨		4.22	8955			
	하		2.84	5937	보통이다		3.99	8408			
	중하		3.75	10308	약간 도움 됨		4.19	1487			
	중상		4.21	49089	매우 도움 됨		3.77	1609			
	중상상		5.65	9766	<i>F</i> 값		49.246***				
	상상		5.21	2161	전체		4.24	78457			
	<i>F</i> 값		849.529***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결혼이민자의 ‘정보 접근 격차’와 ‘정보 활용 격차’ 결정 요인

<표 7>에는 정보 격차 중 종속변수인 ‘정보 접근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인터넷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보 접근 격차는 인터넷 이용여부로 측정되었는데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모든 모델에서 익히 알려진 영향 요인인 성별, 연령, 학력, 언어능력, 가구소득, 지역 변수가 정보 접근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길수록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 변수들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접촉만은 통계적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변수들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 변수들의 경우 정보화 수준에 따라 그 부정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국가별로는 기준 변수인 중국 한족에 비교해볼 때 중국 조선족이거나 베트남 출신일수록 부정적이고 필리핀이나 일본인일수록 긍정적인데 이는 국가 정보화 수준의 경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표 8>에는 정보 격차 중 종속변수인 ‘정보 활용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인터넷 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보 활용 격차는 인터넷 활용 수준으로 측정되었는데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익히 알려진 성별, 연령, 학력, 언어능력, 가구소득, 지역의 영향 요인들 중 성별과 지역의 효과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접근성이 보장된 다음에는 활용 수준에 있어서 도농 간의 차이는 없으며 또한 성별 간의 차이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성별의 경우 ‘모형 6’에서 국가변수가 통제되었을 때에 나타난 것으로 국적별 성별의 분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근 격차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활용 격차의 경우에도, 거주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길수록 활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 변수들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역시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변수들의 경우 접근성과는 달리 활용성에 있어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들이 적어도 정보 격차의 측면에 있어서는 인프라의 제공 측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정보 활용 격차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 모형

독립변수	미시수준				중위수준				거시수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상수)	6.353***	.105	.640***	.120	-2.893***	.144	-2.826***	.146	-3.041***	.146	-1.432***	.170
인구학적 변수												
성별(D)	-1.154***	.059	-818***	.055	-474***	.055	-452***	.055	-355***	.055	-.064	.061
이민자 연령	-.034***	.003	-.057***	.003	-.048***	.003	-.048***	.003	-.053***	.003	-.069***	.003
거주기간	.093***	.004	.029***	.004	.034***	.004	.033***	.004	.031***	.004	.026***	.004
이민자 인적 자본												
이민자 교육수준			1.550***	.021	1.351***	.021	1.352***	.021	1.216***	.021	1.172***	.023
한국어 능력			.494***	.016	.424***	.016	.415***	.016	.396***	.016	.385***	.019
사회적 자본												
신뢰의 수준					2.082***	.065	2.070***	.066	1.797***	.066	1.690***	.066
연결의 강도					1.431***	.063	1.440***	.063	1.209***	.063	1.154***	.062
지원 프로그램 이용												
한국어 교육							-.012	.017	-.008	.017	.000	.017
한국사회 적응 교육							-.031*	.015	-.020	.015	-.013	.015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 지역(D)												
가구소득									-.028	.036	.030	.036
한국에서의 계층									.275***	.013	.244***	.013
출신국에서의 계층									-.013	.010	-.007	.010
출신국의 정보화 수준									.133***	.009	.103***	.009
정문화 선진국(기준)												
정문화 중간국												
정문화 후진국												
출신국가												
중국(기준)												
중국 조진국												
중국 조진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R ²	.020		.166		.202		.202		.219		.228	
수정 R ²	.020		.165		.202		.202		.218		.228	
F	274.222***		1584.657***		1446.616***		1126.438***		859.173***		622.088***	
R ² 변동	.145		.037		.000		.016		.010		.010	
F	3478.699***		919.370***		4.842**		205.840***		84.934***			

또 한국에서의 계층은 관련이 없게 나온 반면 출신국에서의 계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접근성 위주의 정보 격차와는 달리 활용성 위주의 정보 격차의 경우에는 출신국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신국 변수들의 경우 역시 정보화 수준에 따라 그 부정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국가별로는 기준 변수인 중국 한족에 비교해볼 때 중국 조선족 출신이 활용성에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필리핀, 일본, 베트남 순으로 활용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 정보화 수준의 경향과 상이한 것으로 출신국 각각의 정보 접근 환경이 한국이라는 세계 수위권의 정보 접근 환경으로 변경되었을 때 활용성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정보 격차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이해를 더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정보 접근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거주기간과 같은 개인적 특성, 이민자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과 같은 개인의 인적자본, 배우자 변수와 여러 사회관계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역, 소득, 계층과 출신국의 거시-구조적 변수들이다. 즉, 성별에 따라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낮고 거주기간이 길며 교육수준이 높은 이가 더 정보 접근성이 크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가 이민자의 정보 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정보 활용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을 제외한 연령, 거주기간과 같은 개인적 특성, 이민자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과 같은 개인의 인적자본, 배우자 변수와 여러 사회관계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 소득과 출신국 정보화 정도의 거시-구조적 변수들이다. 즉 일반적인 정보 격차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정보 활용성에 차이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한국어 능력이 좋은 이가 더 정보 활용성이 크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 역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가 이민자의 정보 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접근 격차와 활용 격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

반면, 영향이 사라지는 요인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격차의 여러 국면을 주장하는 측면(Hargittai, 2002)에서 볼 때, 정보 격차의 첫 번째 국면에서는 구조적 변수가 중요하지만 정보 격차의 두 번째 국면에서는 그 외의 더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차 격차인 활용 격차에 있어서 지역 효과와 지원 프로그램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책적 접근이 활용 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다면화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보여준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언어의 문제는 어쩌면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언어의 문제가 다른 많은 격차들 중에 정보 격차에 개입되는 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아니라 구사하는 언어와 웹 콘텐츠의 언어 간 괴리로 인한 접근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 환경 상 한국어 능력은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어왔지만 출신국 변수는 계속해서 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면 만일 자국의 언어로 된 웹 환경이 충분하다면 그것의 연관관계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민자의 국가를 통제하는 일은 그래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자국의 콘텐츠가 갖추어진 중국인들의 경우 영어를 구사하는 필리핀인들에 웹 활용이 뒤지지 않았다. 비록 이들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웹 환경에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내국인에 비해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정보 활용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 사회적 자본의 경우 미시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된 속성과 거시적인 구조 제약 속에서도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와 사회의 상호작용이 그 기능적 효과를 발휘할 때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언어와 같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는 별개로 부여되는 출신국가의 변수는 각각을 단일한 척도로 만들기에는 각각의 내적 범주들이 가지는 속성별 상이성과 그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의 정보격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수들 이외의 변수들을 찾고자 하는 여러 모델들이 더 개발해나가야 할 부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수들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발휘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그것을 각각의 효과를 가지는 변수들로 분리해내고 각 변수들의 효과들이 거치는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다차원적으로 연구된 일반적인 정보 격차 연구에 비해 측정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신소외집단으로서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역시 새로운 격차로서 당면한 정보 격차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평면적인 접근성에서 탈피하여 적용할 경우 정책적 함의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아. 2007. “사이버 공간의 사회자본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청택. 2011. 『회귀분석을 이용한 사회과학 자료의 분석』. 민속원.
- 민영. 2011. “인터넷 이용과 정보 격차.” 《언론정보연구》 48(1): 150-266.
- 박수현·박선주. 2010.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컴퓨터 교육 내용 개발.” 《한국정보교육학회지》 14(3): 417-425.
- 백승호. 2003. “정보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2: 81-106.
- 설동훈. 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성찰적 접근.” 『역사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세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I)』.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자료집. pp. 168-176.
- _____. 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진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_____. 박경태·이란주. 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안미리·황윤자. 2011. “신정보소외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정보화 교육과정.”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4(5): 47-54.
- 오미영·정인숙. 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웹스터, 프랭크. 2007. 『정보사회이론』. 조동기 역. 나남.
- 이수상·장임숙. 2010. “다문화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정보리터러시 격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391-419.
- 이용재·이수상·조용완·장임숙. 2009.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113-137.
- 이용재·조용완. 2010.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분석을 통한 이주여성의 정보리터러시 향상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57-75.
- 이향우·이창호·김종철·임현경·고영삼·김원정·김해식·백옥인·이기홍·정이환·정준영·조정문·허윤정·홍성태·홍일표. 2011.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인.

- 이효성. 2003. “전통 뉴스 매체와 뉴스 웹 이용이 이민자들의 주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매개적 역할.” 《한국언론정보학보》 22: 211-247.
- 조용완·이수상. 201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75-99.
- 카스텔, 마누엘. 2004. 『인터넷 갤럭시』. 박행웅 역. 한울아카데미.
- 한건수. 2009. “다문화사회와 정보통신 매체의 역할과 과제.” 제1회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포럼: 다문화가정의 정보활용.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 Autor, David H., Lawrence F. Katz, and Melissa S. Kearney.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189-194.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stells, Manuel. 2000.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ume I: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4th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hiswick, Barry C., and Paul W. Miller. 2005. “Computer Skills, Destination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Earnings of Natives and Immigrants.” *IZA Discussion Paper* 1755.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Compaine, Benjamin M. 2001.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Boston, MA: The MIT Press.
- DiMaggio, Paul, and Eszter Hargittai. 2001. “From the ‘Digital Divide’ to ‘Digital Inequality’: Studying Internet Use as Penetration Increases.” *Working Paper* #15, Summer 2001. Princeton: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Woodrow Wilson School, Princeton University.
- DiMaggio, Paul, Eszter Hargittai, Coral Celeste, and Steven Shafer. 2004. “Digital Inequality: From Unequal Access to Differentiated Use.” pp. 355-400 in *Social Inequality*, edited by Kathryn Neckerma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oolsbee, Austan, and Klenow Peter. 2002. “Evidence on Learning and Network Externalities in the Diffusion of Home Computer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5(2): 317-343.

- Hargittai, Eszter. 2002. "Second-Level Digital Divide: Mapping Differences in People's Online Skills." *First Monday* 7(4). (Available from <http://firstmonday.org/article/view/942/864>).
- _____. 2003. "The Digital Divide and What To Do About It." *New Economy Handbook*, edited by D.C. Jon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pp. 821-839.
- _____. 2010. "Digital Na(t)ives? Variation in Internet Skills and Uses among Members of the "Net Generation"." *Sociological Inquiry* 80(1): 92-113.
- _____, and Amanda Hinnant. 2008. "Digital Inequality: Differences in Young Adults' Us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35(5): 602-621.
- _____, and Steven Shafer. 2006. "Differences in Actual and Perceived Online Skills: The Role of Gender." *Social Science Quarterly* 87(2): 432-448.
- _____, and Gina Walejko. 2008. "The Participation Divide: Content Creation and Sharing in the Digital Age." *Information, Community and Society* 11(2): 239-256.
- Korupp, Sylvia E., and Marc Szydluk. 2005. "Causes and Trends of the Digital Divid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4): 409-422.
- Noll, Roger G., Dina Older-Aguilar, Gregory L. Rosston, and Richard R. Ross. 2000. "The Digital Divide: Definitions, Measurement, and Policy Issues." *Bridging the Digital Divide: California Public Affairs Forum*. Stanford University.
- Norris, Pippa.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no, Hiroshi. 2005. "Digital Inequality In East Asia: Evidence From Japan, South Korea and Singapore." *Asian Economic Papers* 4(3): 116-139.
- _____, and Madeline Zavodny. 2008. "Immigrants, English Ability and the Digital Divide." *Social Forces* 86(4): 1455-1479.
- Prensky, Marc.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1-6.
- Schiller, Herbert I. 1996. *Information Inequality: The Deepening Social Crisis in America*. London: Routledge.
- Selwyn, Neil. 2004. "Reconsidering Political and Popular Understandings of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6(3): 341-362.
- Schiller, Herbert. 1986. *Information and The Crisis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 Tichenor, Phillip J., George A. Donohue, and Clarice N. Olie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2): 159-170.
- World Bank. 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Washington, DC: World Bank.

Determinants of Digital Divide among th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Jae-Hun Ko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immigrants has rapidly increased over last ten years in Korea. Korea is the highly informatized country, and the adaptation to the information society is important to immigrants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factors which make influences on the digital divide of immigrants. This study tries to indicate what kinds of factors make influence on the digital divide of immigrants. This study analyzes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clas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variables, focusing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tried to show operating mechanism of the digital divide of immigran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four points. Firstly, as fo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it shows a different result of the digital divide according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Secondly, household income among the social class variables statistically didn't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for internet use. Thirdly, it has the significant result, which is caused by Korean language fluency of immigrants among human capital variables. Lastly, the interaction between others among the social capital variable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increases internet access and internet use of the immigrants.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immigrants' "social capital" which encourages their internet access and using internet. It needs proper policies to overcome the digital divide of immigrants. This study will give backgrounds to make policies to overcome the digital divide of immigrants. It would be necessary for immigrants to link strongly with social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ir social capital.

Keywords: immigrants, digital divide, internet use, social capital, country of origin

연구논문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생활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 지 은* · 이 정 환** · 김 석 호***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집단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지닌 사회경제적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파편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총체적 밑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직장생활 간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삶에 대한 인류애적 관심과 사회학적 이해를 도모하며, 사회통합 정책수립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실력, 복지혜택과 같은 무형의 환경, 직장 내 동료의 지지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제언을 함께 제시한다.

주제어: 외국인근로자, 정신건강, 직무만족, 작업환경, 직장 내 관계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hanji0109@gmail.com.

**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ungwlee@chol.com.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eokhok@skku.edu.

I. 서론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인종 혹은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해지고 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그리고 결혼이민자 어머니를 따라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중도입국자녀들이 대표적인 새로운 집단 중 하나이며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 외에도 이미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 내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특성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화이트칼라 외국인근로자들과 블루칼라, 즉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3D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이들이 한국사회에 등장한 기간과 이들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한국사회로부터 적은 혹은 부정적 차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이주민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체류가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 그리고 유독 제3세계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배타적 태도, 그 외에도 지금까지 대중매체를 통해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한국인들에게 각인된 불법체류와 같은 사회문제 등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상대적 무관심 혹은 부정적 태도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이들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를 전후로 국내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확산되었고, 이를 계기로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550,000명에 달하는 3D업종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며, 이들은 한국전체 비숙련직 근로자의 93%에 달한다(이정환·이성용, 2007). 또한, 한국사회가 이들에 대해 가지는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고용허가제의 실시 이후 불법체류자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체류기간은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이들의 한국생활경험이 앞으로 아시아 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집단을 대한다면, 이들 집단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언론계에서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여 진다. 작년 말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 공중파 TV프로그램에서 외국인근로자들과 연예인들이

하루 동안 함께 한국을 여행하는 시간을 기획하여 방송하였다. 여행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집단으로서가 아닌 면대면 개인으로서 마주하게 되고,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이들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하였다. 이렇듯 언론과 사회 모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연구는 과거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부 학자들 내에서만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김석호·한지은, 2009; 박형기, 2004; 반미희·김석호·이정환, 2012; 석현호·오계택, 1996; 이정환, 2001; 이정환·석현호, 2001; 이정환·이성용, 2007; 이혜경, 1994;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정기선, 1996; 차승은·김두섭, 2008). 이들은 과거 산업연수생제 시절의 외국인근로자 법률상 문제, 인력관리와 같은 행정상 문제, 그 외에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문제, 고용허가제 이후 이들의 한국생활적응 등에 관심을 두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여러 연구들이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 중 이주민이라는 측면과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베리와 동료의 연구(Berry, Kim, Mind & Mok, 1987; Berry, 2002)에 따르면 이주라는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은 기존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유입되어 재적응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 역시 적응이라는 과업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인데, 한국생활적응은 이들의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정기선, 1996).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들의 한국생활적응을 중요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생활적응은 크게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Berry, 2002; Ward, 1999). 심리적 적응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 확고한 개인 정체성, 문화 정체성 등을 포함한 적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내적 결과라면, 사회문화적 적응은 직장이나 학교, 가족 내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외적 결과로 구분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내적 심리적응에 많은 관심을 두고 설명변인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

다. 그 결과 크게 직장생활관련요인과 사회생활관련요인에 주목할 수 있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직장요인과 사회생활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연구결과들은 지금까지 매우 상이하다.

그런데 사실상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생활공간인 직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표면적인 접근들만이 이루어졌을 뿐,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각 하위 차원이 이들의 내적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직장생활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내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시·거시적 차원의 적절한 예방과 개입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되고자 한다.

II. 외국인근로자와 정신건강

한 개인의 건강은 자신의 발전과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내는 자본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질병의 발생은 개인소득 이외에도 국가의 연간소득,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부담을 안겨주는데, 이를 질병의 사회경제적 부담(socio-economic burden of disease)이라 한다. 정영호·고숙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2001년 추계된 한국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12조 원 정도였다.

질병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질병치료비를 포함하는 직접비용과 작업손실비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과질환의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에 투입되는 직접비용보다는 생산성 저하와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Thomas and Morris, 2000). 그러나 정신과질환이 생산성 저하와 같은 작업손실비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병으로 변환되어 나타나는 신체증상화(somatization) 현상과 같이,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특히 성인 이민자들은 모국어를 포함한 본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맞춰진 정체성과 생활방식을 획득한 상태에서, 이입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적응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인 이민자들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그 결과 심리적으로

로 우울, 불안, 소외감 등을 경험한다(Berry *et al.*, 1987).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적용가능하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19세 이상의 성인들로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한국인 근로자들보다 높다. 또한 가족과 분리되어 타지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것 역시 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외국인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취약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개인의 발전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제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1. 외국인근로자와 직장생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이주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 종교, 혼인여부, 소득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민에 대한 기대로서 모국에서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경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정기선·한지은, 2009). 마찬가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원가족과의 자아분화정도에 따라 정신건강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영분·이유경, 2009). 그 외에도 이민의 동기가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동기이나 혹은 싫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동기이나에 따라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오성희·박기환, 2007)는 연구결과를 볼 때 이민이라는 결과적 행동이 내포한 배태성이 이주민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은 이주 이전에 형성된 설명요인들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주 후 생성된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이웃 및 사회복지 실천가와 같은 전문가의 지지적 태도, 소득활동여부, 자녀 유무는 중요한 요인들로 확인된 바 있다(박미정·엄명용, 2009; 정기선·한지은, 2009).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이주민의 정신건강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주민이 느끼는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민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외국인이 인지한 한국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과의 주기적인 접촉, 높은 접촉빈도가 사회적 거리감을 낮

추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석호·김상욱·한지은, 2009).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타 이주민에 비해 한국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직무관련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김혜성, 2008; 박형기, 2003, 우명이·서경현, 2008; 윤숙희·배정아·이소우·안경애·김세은, 2006). 그 외에도 가족문제로부터 비롯된 스트레스가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정기선, 1996; 반미희·김석호·이정환, 2012)와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인과의 긍정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소외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김석호 외, 2009) 등은 직무관련변수를 제외한 환경적 측면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을 무시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직장관련변수와 사회생활관련변수가 모두 중요한 설명변수로 지목되고 있으나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변수인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 변수가 가지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한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 모두를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인지하고, 두 차원에서 적절한 예방과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파악된 직장관련변인은 그것이 담고 있는 다차원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한 차원에서 측정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직장생활이라는 개념은 물리적 차원에서부터 심리적 차원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 그 자체가 직장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둘째, 근무하는 작업환경도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역시 직장생활을 차지하는 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1)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장 내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직무에 만족할수록 근무의욕이 높아지고, 이는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방하남·김상욱, 2009; 조정

진·김지용·변정수, 2006; Yoo, Kwon, Lee, Kwon, & Kwon., 2009). 따라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생산성 감소와 같은 조직관련 변수 이외에도 가정생활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된다(유미애·손연정, 2009; Currivan, 1999; Liou, 2008).

이러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들은 동기이론에 근거해 설명가능하다. 동기란 행동의 근원이 되고 활력을 불어 넣어 주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황규대, 2006). 동기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내재적 동기라고 한다(신유근, 2007). 동기이론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가 형성된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조직몰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안녕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논리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지수는 높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겠다.

2) 작업환경

작업환경은 대개 작업장 시설, 급식, 그리고 복지혜택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다시 유형(tangible), 즉 물리적 작업환경과 무형(intangible)의 작업환경 모두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눈에 직접 드러나는, 식별이 상대적으로 쉬운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과 그렇지 않은, 의료혜택, 단체교섭과 같은 무형의 작업환경에 만족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관점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김석호·김상욱·한지은, 2009), 이를 유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장 시설을 포함하는 유형의 작업환경은 노동생산성 향상, 직무몰입, 조직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경옥, 2004; 이윤경·정혜선·장원기, 2006). 그 외에도 개인이 처한 물리적 혹은 사회·심리적 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강희경·김영미·이은주, 2009; 오영아·이명선·이경용, 2002; 이주일, 2003).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근로자가 불안, 긴장,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보고한 연구결과들(이명선, 1991; 이경용, 2000)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처한 작업환경과 그들의 정신건강상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 추측가능하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업환경에 만족할수록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작업환경의 두 가지 차원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각 차원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았다.

3) 한국인 상사/동료 관계

개인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한 관계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때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코헨·호버만(Cohen and Hoberman, 1983)은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 명명하며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사회적지지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지지는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스트레스를 직접 감소 혹은 간접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Carole and Charles, 1987; House, 1981).

특히 호손실험으로부터 나온 인간관계이론을 살펴보면, 생산능률의 저하는 앞서 언급된 물리적, 작업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간적, 사회적 환경에 개인이 적응하지 못할 시에 생겨나는 것이라 주장된 바 있다. 따라서 함께 일하는 상사의 뛰어난 지도력과 감독력, 동료의 관심과 배려는 개인의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 중 상당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특히, 대부분의 회사에서 숙소를 정해주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한국생활 중에서 한국인들과의 만남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 역시 직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한국인들과의 관계, 한국인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명단과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표집틀을 구성하여 조사대상업체 표본추출을 진행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과반수가 집중되어 있는 경인지역에서 크기비례확률에 근거하여 다단계지역집락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표본 추출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집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기/인천 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현황을 입수한 후, 1만6천여 개의 업체 중 주요 6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근로자 고용업체만으로 표집틀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는 인천 1개 지역과 경기 7개 지역으로 한정하여 시/군/구 8개를 인구비

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 추출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시/군/구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 블록인 읍/면/동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최종 조사블록을 선정, 총 250개 업체 6개국 900명의 조사대상에게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한 후, 모집단 업체와 표본의 업체를 비교한 결과 그 규모 분포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되었다.

1. 변수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정신건강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 하나가 우울증으로 보고되어 있다. WHO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는 우울증이 자살 및 기타장애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우울증후군 자가진단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대표적인 평가도구인 SCL-90-RDML 90개 문항 가운데에서 우울증을 측정하는 14개 문항을 추려내 구성한 것이다. 지난 1달간 응답자가 14가지 항목에 제시된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를 1점 ‘전혀 없었음’부터 5점 ‘매우자주’ 내에서 기입하도록 하였다. Cronbach's α 는 .843이었다.

2) 독립변수: 직장생활

직장생활은 크게 직무만족, 작업환경만족, 그리고 직장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무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맡은 일 자체에 대한 흥미정도와 만족정도, 그리고 작업에 임하는 자신의 열심정도 등을 포함한 9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 중 3개 문항은 응답자의 응답결과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역문항을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기기입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매우 만족’ 부터 5점 ‘매우 불만족’까지 내에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분석 시에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이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는 .747이었다.

다음으로 작업환경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형, 즉 물리적 작업환경과 무형의 작업환경을 구분하는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업장 환경, 숙소시설,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4개 문항

을 사용하였다. 또한 복지제도 등 무형의 작업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혜택, 단체교섭, 노무관리방식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5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직무만족과 마찬가지로 1점 ‘매우 만족’부터 5점 ‘매우 불만족’까지 내에서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분석시에는 역코딩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형작업환경에 대한 Cronbach's α 는 .751이었고 무형작업환경은 .842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상사와 동료의 관계 역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상사로부터의 지지적 관계는 총 2개 문항으로 직장상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나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직장동료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에게 협조적인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상사로부터의 지지의 Cronbach's α 는 .701, 동료로부터의 지지의 Cronbach's α 는 .812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외국인근로자의 출신국적별 분포는 베트남이 232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필리핀 166명(21.4%), 태국 146명(18.8%), 인도네시아 97명(12.5%), 스리랑카 74명(9.6%), 몽골 60명(7.9%) 순이며, 총 표본수 776명이 포함되어있다. 이들 중 남성이 70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78.9%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32.6세로 집계되었다. 최종학력은 각 국가의 교육체계를 한국교육체계로 환산한 결과 고졸이하가 65.6%, 2년제 대학이상 4년제 대학 졸업 이하에 속하는 집단이 전체의 33.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6명에 그쳤다. 혼인상태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경우가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 역시 44.3%로 많았다. 다음으로 이들의 월 소득은 평균 1,338,062원으로 다른 외국인근로자 연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거주기간은 평균 5년이었으며 스스로가 평가한 한국어 실력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했을 때 평균 2.75점이었다.

〈표 1〉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776)

변수		빈도/평균	%/표준편차
국적	베트남	232	29.9
	태국	146	18.8
	필리핀	166	21.4
	인도네시아	97	12.5
	스리랑카	74	9.6
	몽골	60	7.9
성별	남자	708	8.5
	여자	66	91.3
종교유무	있음	611	78.9
	없음	165	21.2
연령		32.6	5.61
최종학력	고졸이하	507	65.6
	2년제대학이상-4년제대학졸업이하	261	33.6
	대학원이상	6	.5
혼인상태	미혼	344	44.3
	기혼/동거	404	52.0
	사별/별거/이혼	28	3.6
월소득	(원)	1,338,062	223000
한국거주기간	(년)	5.03	1.86
한국어실력	(1아주못함~5아주잘함)	2.75	.74

2.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2〉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이 앞서 이론적 검토로부터 확인된 설명변인들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회귀모형 I은 외국인근로자가 지닌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출신국가, 성별, 종교, 연령, 학력, 한국어실력 모두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신국가의 차이는 베트남 출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우울증상을 측정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몽골 역시 그러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남성 외국인근로자가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우울정도가 낮았다. 또한, 한국어 실력이 나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혼인상태와 월소득, 그리고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 결정요인

설명변수	회귀모형 I	회귀모형 II	회귀모형 III	회귀모형 IV
상수	41.293***	47.56***	44.84***	44.99***
태국(베트남기준)	.76	-.29	-.49	-.18
필리핀	-1.05	-.68	-1.66	-1.59
인도네시아	3.05**	2.06 †	.78	1.02
스리랑가	.73	.61	-.66	-.61
몽골	3.04*	2.06	1.36	1.47
남자(여자기준)	-1.95*	-2.80**	-2.02 †	-1.96 †
종교(없음기준)	-1.44	-.38	.11	.08
연령	-.18**	-.15*	-.13 †	-.12 †
학력	-.80**	-.71*	-.62 †	-.67*
기혼/동거(미혼기준)	.21	.09	.16	-.02
사별/별거/이혼	-.37	-.17	.05	.07
월소득	-.01	.01	.01	.01
한국거주기간	-.17	-.19	-.28 †	-.31*
한국어실력	-1.03**	-.85*	-.54	-.44
직무만족		-.29***	-.21**	-.17**
작업환경_유형			.19	.19
작업환경_무형			-.35**	-.33**
지지관계_상사				.06
지지관계_동료				-.68*
R^2	.098	.138	.152	.156
N	673	627	581	576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회귀모형 II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만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 자체에 만족할수록 우울증상이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와 맥을 같이 한다. 외국인근로자 이외에도 일반 근로자들 역시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역시 현재 자신이 조직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만족할수록 우울증상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헤겔이 정의하는 노동의 의미로부터 그 해석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헤겔은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단순한 욕구충족수단을 넘어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로 보았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있어서도 한국에서 하는 노동이

자신이 판단하기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위라 인지하고 이에 만족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겠다.

세 번째 회귀모형Ⅲ은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본 모형이다. 특히 작업환경을 유형의 작업환경과 무형의 작업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유형의 작업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무형의 작업환경, 예를 들어 의료혜택이라든지 단체교섭과 같은 간접적으로 측정되어질 수 있는 작업환경에 만족할수록 우울증상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많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이주결심 및 동기가 더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함(이정환·김석호, 2010)이라는 데서 착안해본다면, 그러한 이주동기에 적합한 목적이 달성되어진다면 오히려 주어진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이는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해석해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 그리고 고용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설령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한다 할지라도 외국인근로자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피해가 아니며, 그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무형의 작업환경의 경우, 의료혜택과 같은 복지혜택은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근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시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파악되어진다. 또한 무형의 작업환경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혹은 3D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차별’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지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무형의 작업환경에 만족할수록 우울증상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모형은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 변인의 15%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모형Ⅳ는 조직 내 인간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앞서 언급된 외국인근로자의 개인적 특성과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 그리고 유형·무형의 작업환경이 미치는 효과를 모두 통제하고 보더라도 조직 내 인간관계가 설명하는 부분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상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동료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그 부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외국인근로자는 직장생활에 있어서 한국인 직장동료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우울증상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외국인근로자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에게 베푸는 동정보다는 함께 일하는, 유사한 사회적 지위에 처한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정신건강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V. 토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집단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지닌 사회경제적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90년대 이후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줄었으며,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민관의 논의 대상을 여성결혼이민자로 국한시키는 현 추세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파편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총체적 밑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국 내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생활 실태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 내에서의 생활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직장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본 표본에 한하여, 주어진 직무에 만족할수록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적었으며, 무형의 작업환경에 만족할수록,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지지를 받을수록 그러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첫째, 직무만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입국목적이 상당부분 본국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창업을 위한 목돈마련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역시 이러한 논의와 무관하다 할 수 없겠다. 비인권적 대우와 강도 높은 노동도 근절되어야 할 것이나 주어진 직무에 대한 흥미와 관심 역시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속적이며 건강한 직장생활과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여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직장변수 중 하나라 하겠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정책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도 직무만족과 관련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도하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무형의 근로환경이 유형의 근로환경과는 다르게 외국인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에 대한 보다 폭넓은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결과 중 하나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려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한국에서의 물리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해석도 있을 수 있으나, 역으로 살펴보면 의료혜택, 단체교섭과 같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여건이 만족스럽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한국 내 외국인근로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노사 간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무형의 근로환경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견조율을 통한 갈등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외국인근로자의 사회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침해당했을 시 권리를 구제해줄 수 있는 정책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반복되는 단순 업무 속에서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일생동안 집단생활을 벗어나 살 수 없으며,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고려할 때 직장동료와의 관계는 제법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고 본 표본에서 그것이 검증되었다. 직장 동료에는 한국인 직장동료 이외에도 같은 출신국 동료들, 다른 출신국 동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국적을 불문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서로에게 지지가 되어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동료들과의 지지적 관계 형성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적응과 직장생활,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 직장 내 삶에서의 심리적 만족을 정량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장 관련 변인들은 비숙련직 근로자이자 이주민인 이들을 한국사회가 어떻게 포용하고 같이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앞으로의 과제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논의하고 모형화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집단의 역할과 중요도가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경·김영미·이은주. 2009. “이웃환경 무질서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 일상생활스트레스와 부정적 가족사건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 179-204.
- 김석호·김상욱·한지은. 2009. “Social Distance between Foreign Workers and Koreans: From Foreign Workers’ Viewpoint.” 《한국인구학》 32(2): 115-140.
- 김원·황태연·함병주·이준석·최병휘·김세주·서용진·강은호·우종민. 2007. “주요우울증이 근

- 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46(6): 587-595.
- 김혜성. 2008. “[정신건강] 개인적 요인과 직무 관련 요인이 직장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pp. 187-188. 이화여자 대학교. 2008.10.24.
- 박경옥. 2004. “작업환경 및 근무조건 특성과 제조업 근로자의 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련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0(3): 272-282.
- 박미정·엄명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 박형기. 2004.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및 사회적 조건과 심리적 적응.”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반미희·김석호·이정환. 2012.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한국이민학》 3(1): 37-66.
- 방하남·김상욱. 2009.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결정요인과 구조분석.” 《한국사회학》 43(1): 56-88
- 석현호·오계택. 1996. “한국내 외국인 취업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헌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 206-214. 서울대학교, 1996.11.
- 신유근. 2007. 『인간존중의 경영』. 다산출판사.
- 오성희·박기환. 2007.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계호주이민 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1(4): 55-69.
- 오영아·이명선·이경용. 2002. “제조업 근로자의 작업환경인지도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4(3): 301-314.
- 우명이·서경현. 2008. “경험노인요양기관 종사자와 직무스트레스와 강인성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91-108.
- 유미애·손연정. 2009. “기혼 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 사회적지지,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 입간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6(4): 515-523.
- 윤숙희·배정아·이소우·안경애·김세은. 2006.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음주 및 흡 연 행태.” 《보건과 사회과학》 19: 31-50.
- 이경용. 2000. “NIOSH 직업 스트레스 조사표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보건과 사회과학》 8: 57-112.
- 이명선. 1991.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의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 협회지》 17(2): 101-110.
- 이영분·이유경.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분화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 복지학》 26(8): 63-86.
- 이윤경·정혜선·장원기. 2006.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산업간호학 회지》 15(2): 115-125.

- 이정환. 2001.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공정성인식.” 《한국인구학》 24(2): 179-206.
- _____. 김석호. 2010.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실태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_____. 석현호. 2001. “외국인노동자의 기대체류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5(4): 129-157.
- _____. 이성용. 2007.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30(2): 147-168.
- 이주희. 1999.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환경교육》 12(2): 110-119.
- 이주일. 2003. “조직 장면에서의 분노, 불안, 우울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및조직》 16(3): 19-58.
- 이혜경. 1994.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 89-113.
- _____. 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6(3): 47-77.
- 임승락·김지혜·이동수·김이영. 2000. “여성의 직무스트레스, 대처자원과 정신건강: 종합병원 일반사무직을 대상으로.” 《신경정신의학》 39(1): 999-1009.
- 전영자·전예화. 201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13.
- 정기선. 1996. “국내 외국인 취업자의 사회심리적 적응.”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201-205. 서울대학교, 1996.11.
- _____.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정영호·고숙자. 2004. “5대 사망원인 질병의 사회, 경제적 비용추계.” 《재정논집》 18(2): 77-103
- 조정진·김지용·변정수. 2006.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심혈관질환위험요인 및 대사증후군.” 《대한산업의학회》 18(3): 209-220.
- 차승은·김두섭. 2008.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비교.” 《한국인구학회》 31(3): 131-157.
- 황규대. 2007. 『조직행동의 이해』. 박영사.
- Berry, John W., Uichol Kim, Thomas Minde, and Doris Mok.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erry, John W., Marshall H. Segall, and Cigdem Kagitcibasi (eds.). 1997.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2nd edition.

- Boston, MA: Allyn and Bacon.
- Berry, John W. 2002.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615-631.
- Holahan, Carole K, and Charles J. Holahan. 1987.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Aging: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42(1): 65-68.
- Cohen, Sheldon, and Harry M.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urrihan, Douglas B. 1999. "The Causal Order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odels of Employee Turnover."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9(4): 495-524.
- House, James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Liou, Shwu-Ru. 2008.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Forum* 43(3): 116-125.
- Stewart, Walter F., Judith A. Ricci, and Steven R. Hahn. 2003. "Cost of Lost Productive Work Team among US Workers with Depression." *Journal of Medical Association* 289(23): 3135-3144.
- Thomas, Christine M., and Stephen Morris. 2000. "Cost of Depression among Adults in England in 2000." *Journal of British Psychiatry* 183(6): 514-519.
- Yom, Young-Hee, Sung-Bok Kwon, Yoon-Young Lee, Eun-Kyung Kwon, and Jong-Wook Ko. 2009.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of Nurses: Focused on Work Re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3): 329-337.
- Ward, Colleen.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2012. 9. 1. 접수; 2012. 9. 28. 수정; 2012. 10. 15. 채택)

Effect of Job-related Satisfaction on Mental Health of Im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Ji-eun Han

Sungkyunkwan University

Junghwan Lee

Cheongju University

Seokho Kim

Sungkyunkwan University

Despite the fact that the immigrant workers have socio-economical contribution to Korean society, there is a tendency not to include them in the discourses of Korean multiculturalism. This would lead us to an in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so that giving hard time to draw holistic frame for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is to ex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ers' mental health and job-related life in humanistic and sociological approach toward the immigrants; hopefully, this could be used as a practical data for policy making on social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It finds out the importance of the language, intangible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from co-workers. Som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 are followed.

Key Words: immigrant worker, mental health, job satisfaction, work environment, workplace relation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약칭: KIM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

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3. 감사 2인
 4. 이사: 당연직 이사 이외에 선임직 이사를 50인 이내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5. 상임이사: 20인 이내로 하되, 총무, 편집, 연구, 기획, 섭외, 국제,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전임 회장, 전임 부회장, 차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차기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이 전임 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

- 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제1차 투표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제1차 투표의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로 정한다.
- ②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가부투표를 실시하며,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선출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제17조에 의한 연구회의 운영, 기타 학

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기획이사는 학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정책토론회 기획 및 개최, 국제세미나 개최,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⑦ 섭외이사는 회원유치,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뉴스레터 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⑧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⑨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제4장 조직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결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의 승인
 - 5. 본 학회의 해산
 -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1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5. 회원에 대한 포상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상임이사회)

- ① 본 학회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상임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④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회원의 회비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상임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3. 사업에 따른 수입금
 - 4.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5. 본 학회의 기금
 - 6.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anet2007@gmail.com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

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부	가, 부, 부
가, 가, 부분	가, 부분, 근본	가, 근본, 근본	부분, 부, 부
가, 가, 근본	부분, 부분, 부분	가, 근본, 부	근본, 부, 부
가, 가, 부	부분,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	부, 부,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흔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국’(kimanet2007@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 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벤테(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

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1) 도서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 설동훈·김윤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 이해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ルゼーション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働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 289-314).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최홍엽. 1997.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켄마홀, 2006.5.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2권 제1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전화: (063) 270-2917

한국이민학 제3권 제2호

인쇄일: 2012년 12월 31일

발행일: 2012년 12월 31일

발행인: 한경구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인쇄처: 도서출판 기쁨사

전화: (031) 889-4451

팩스: (031) 889-4452

ISSN 2093-604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3 No.2 2012

Articles

Denmark's Immigration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ystem

■ Dong-Hoon Seol, and Byoungha Lee

Determinants of Digital Divide among th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 Jae-Hun Ko

Effect of Job-related Satisfaction on Mental Health of Im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 Ji-eun Han, Junghwan Lee, and Seokho Kim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